

조선총독부 사법관 특별임용제도의 민족에 따른 구별과 운용*

문 준 영**

目 次

- I. 서론
- II.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의
성립
 - 1. 신 재판소 시기의 사법관
임용제도
 - 2. 통감부재판소 시기의 사법관
임용제도
 - 3. 병합 후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의 정비
- III. 1920년 제령 제11호의 제정과
민족별 특별임용제도
 - 1. 1920년 제령 제11호,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
 - 2. 조선인과 일본인의 특별임용 근거
및 임용 고시의 구별
- IV. 민족에 따른 이원적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
 - 1.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민족별 구성
및 특별임용의 규모
 - 2.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
- V. 결론

투고일자 : 2023년 7월 14일, 심사일자 : 2023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충원을 위해 일반임용제도와 특별임용제도를 운용하였다. 1910년 10월 1일 공포·시행된 제령(制令) 제6호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朝鮮總督府判事及檢事ノ任用ニ關スル件)은 본국 일본의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1890년 공포)에 따른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시보 자격이 있는 자를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를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두 개의 제령이 시행되었다. 위 제령과 같은 날 공포·시행된 제령 제7호 '조선인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朝鮮人タル朝鮮總督府職員ノ任用ニ關スル件)에 따르면, "제국대학, 관립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년 이상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銓衡)을 거쳐 특별히 이를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한편, 1920년 7월 29일 공포·시행된 제령 제11호 '조선총독부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朝鮮總督府判事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에 따르면, "조선총독부판사는 지방법원 지청(支廳)의 판사로 보할 자에 한하여 당분간 5년 이상 판임(判任) 이상의 관에 재직하며 사법사무에 종사하고 판임관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은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고시를 거쳐 이를 특별히 이를 임용할 수 있다."¹⁾

조선총독부의 사법관 특별임용제도에 관한 종래의 문헌에서는 대개 1910년 제령 제7

1) 1910년 10월 1일 제령 제5호에 의해 설치된 조선총독부재판소는 종전의 통감부재판소(統監府裁判所) 조직과 심급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재판소는 '고등법원(高等法院), 공소원(控所院),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구재판소(區裁判所)'의 4종으로 하고, 민사·형사 합의사건의 제1심은 '지방재판소 합의부(3인의 판사)→공소원→고등법원'에서, 단독사건은 '구재판소 단독판사→지방재판소 합의부→고등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재판제도는 1912년 3월에 대 개정을 겪는데, 재판소의 경우 종전의 구재판소를 폐지하여 '고등법원,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법원'의 3종으로 축소하고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지방법원 지청(支廳)을 설치하여 지방법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단독판사의 심판권을 확장하여 제1심 사건은 단독제 심판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제도를 3급 3심제로 단순화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청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제2심은 복심법원, 제3심은 고등법원이 취급하게 되었다(1912년 3월 18일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조선총독부 출범 당시에는 제1심 사건을 취급하는 재판소와 검사국(檢事局)이 지방재판소 8개소, 지방재판소지부(支部) 12개소, 구재판소 69개소, 총 89개소에 설치되었으나, 1912년 3월의 제도 개편을 비롯한 조직과 인원 정리를 거쳐 1915년에는 지방법원 8개소, 지방법원 지청 55개소 등 총 63개소로 줄어들었다.

호는 조선인에게만 시행되는 특별임용제도이고 1920년 제령 제11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임용제도이며, 후자인 1920년 제령 제11호를 통해 재판소서기·통역생으로 재직 중인 조선인과 일본인이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도 이전의 논고에서 그렇게 설명한 바 있다.²⁾ 사실 이와 같은 설명은, 식민지시기 법조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 관여하여 편찬된 법원과 검찰의 연혁 자료에서 이미 제시되어 온 것이다. 이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문헌이라고 할 김병화(저술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속근대한국재판사(續近代韓國裁判史, 1976)*에서는 1910년 제령 제7호를 “판검사 특별임용의 제일 최초의 것”, 1920년 제령 제11호를 “판사 특별임용의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후자에 따라 제정된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규칙’(1920.8. 조선총독부령 제108호)을 “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시험규정의 첫 번째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이 책에서는 1920년 제령 제11호가 조선인과 일본인에 ‘공통’ 적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제령이 조선인과 일본인에 공통된 특별임용제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대검찰청에서 펴낸 *한국검찰사(1976)*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있다.⁴⁾ 김병화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 편술된 *한국법관사(1981)*에서는 정부수립 후 제2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익진(金翼鎭)을 비롯한 6명의 법조인을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해 “최초로 등용된 분”이라 하고 “많은 총독부재판소 서기통역생이 특임 판·검사로 등용되었으며 그분들 중에는 해방 후 대법관을 지내신 분만도 5, 6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1920년 제령 제11호에 대해 “이것은 소위 한국인을 위한 특임판사(特任判事)로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제도가 조선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⁵⁾ 아무튼, 조선인도 1920년 제령 제11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

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470면; 김창록, “식민지 조선의 법조 양성: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41호, 2011, 217면;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58면; 박천웅, “민족성과 채용방식에 의한 조선총독부 사법관료 구조의 계층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 444면; 김두식,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219면 각주 등.

3) 金炳華, 續近代韓國裁判史, 韓國司法行政學會, 1976, 117면. 같은 책의 서명을 바꾸고 해방 후의 상황을 추가하여 간행한 金炳華, 韓國司法史(近世編), 訂正重版, 一潮閣, 1979, 96-97면. 참고로 김병화는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4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4) 大檢察廳, 韓國檢察史, 大檢察廳, 1976, 170면.

5) 法院行政處 編, 韓國法官史, 六法社, 1981, 54면. 김병화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1975년 12월에

위에 있음은 분명하다.

위 두 제령의 문언을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1910년 제령 제7호는 ‘조선인’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나, 1920년 제령 제11호의 경우 그 문언만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판소서기 재직자라면 판사로 특별임용될 수 있다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 제령 제11호를 제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및 실제 임용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제도에 관한 종래의 이해와 설명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이 글에서는 1920년 제령 제11호는 실제로는 일본인만을 위한 특별임용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 바꿔 말하면, 조선총독부는 1910년 제령 제7호와 1920년 제령 제11호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별개의 특별임용제도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식민지시기 조선인은 1910년 제령 제6호의 일반임용, 1920년 제령 제7호와 1920년 제령 제11호의 두 개의 특별임용, 즉 모두 세 가지의 임용경로를 통해 조선총독부 사법관이 되었고, 특히 1920년 제령 제11호 시행 후에는 조선인들도 주로 이 제도를 통해 특별임용되었다는 식으로 본다. 그러나 이 글의 결론에 따르면, 조선인은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라는 두 가지 임용경로를 통해 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되었고, 1920년 제령 제11호는 사실상 조선인과는 무관한 특별임용제도이다.

그러나 본론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글의 핵심 논지는 1920년 제령 제11호가 일본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지만, 이를 논증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앞서 말했듯

쓴 본서의 서문에 따르면, 법제사가인 전봉덕(田鳳德) 박사(경성제국대학, 1939년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가 원고에 대해 조언하였고, 제주의 김영호(金榮鎬) 변호사가 일제시대의 법관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같은 책, 2면.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이하 ‘국편 한국사DB’이라 한다)의 직원록 자료를 검색하면, 김영호와 동명의 사람이 1929~1939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서기검통역생으로 근무하고 미군정기에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특별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6) 기존의 문헌에서는 식민지시기 재판소서기에서 판검사로 특별임용된 자들의 임용 근거나 임용시험에 대한 설명도 모호하거나 정돈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이영근 외, 법에 사는 사람들, 삼민사, 1982, 153면에서 특별임용자 출신인 김익진에 대해 “1920년 판사시험 합격” 후 여러 법원에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다. 김이조, 법조를 움직인 33인의 법조인상, 법률출판사, 1999에서는 김세완(金世琬)은 “1925년에 판·검사특별고시에 합격”했고, 김종근(金鍾根)은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이우익(李愚益)은 “1913년 판사전형시험 합격”했다고 하고 있다(같은 책, 35면, 43면, 182면).

이 적어도 같은 제령의 문언상에는 그러한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 그 점을 정면에서 명료하게 말해주는 조선총독부의 법규나 문서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1920년 제령 제11호의 입법이유서, 같은 제령 및 1910년 제령 제7호에 따른 특별임용제도를 구분·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조선총독부 문서 및 인사자료, 실제 특별임용사례 등을 통해 1920년 제령 제11호의 문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같은 제령의 입법 목적 및 민족 구분에 따른 특별임용제도 운용의 실태를 보여주려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7호의 사법관 임용제도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제령에 의한 일반 및 특별임용제도는 병합 후에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임용제도를 조금 손질을 가해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임용제도로 채용한 것이었다. 통감부재판소 시기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임용 자격을 구분하여 임용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한 1908년 8월에 출범한 새로운 한국재판소의 판검사 임용제도를 통감부재판소 설치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서,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7호 및 1920년 제령 제11호의 임용제도의 전신에 해당하는 임용제도들이 이미 새로운 한국재판소 및 통감부재판소 시기에 마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1920년 제령 제11호의 제정에 관련된 자료, 1920~30년대 특별임용제도 시행 관련 인사자료를 살펴보고, 1920년 제령 제11호가 사실상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로써 도입되었으며, 두 가지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특별임용 근거가 각각 1910년 제령 제7호와 1920년 제령 제11호로 준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선인과 일본인의 특별임용사례를 분석하여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Ⅱ.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의 성립

1. 신 재판소 시기의 사법관 임용제도

주지하다시피 을사조약(1905.11.27.) 이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사법권 침탈은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1907.1.~1907.12.)에는 각급 재판소에 배치된 일본인 법무보좌관(法務補佐官)의 재판사무 지도 및 사법제도의 부분적 정비를 통해 재판사무의 개량

이 시도되었다. 제2단계(1908.1~1909.10.)에는 정미조약(1907.7.24.)에 따라 재판사무와 행정사무가 분리되고 새로운 한국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제3단계(1909.10.~1910.8.)에는 1909년 7월 20일 조인된 '한국의 사법·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의 재판소가 폐지되고 일본 정부의 재판소인 통감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제4단계(1910.8.~1912.3.)에는 강제병합 후 통감부재판소가 조선총독부재판소로 개편되고 사법제도 관련 법제가 재정비되었다.⁷⁾

제2단계 시기 이래 재판소에는 일본인과 한국인 직원이 섞여 있었고 그 임용 자격과 임용 근거도 서로 달랐다. 신 한국재판소 시기에는 한국 정부의 재판소 직원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임용하였다면, 통감부재판소 시기에는 일본 정부의 재판소 직원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을 임용하였다. 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에는 '내지인'(內地人)과 '조선인'에 대해 일반임용제도와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되었다. 다음의 <표 1>과 <표 2>는 신 재판소, 통감부재판소, 총독부재판소의 각 시기에 한국인·조선인 및 일본인의 사법관 임용에 관한 근거 법령과 임용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신 재판소~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 한국인·조선인의 사법관 임용 관련 법령 및 임용자격의 변화

구분	신 재판소 시기		통감부재판소 시기	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
관련 법령	1906.10. 한국 칙령 제63호 '법관전고규정'	1909.4. 한국 칙령 제48호 '법관임용령'	1909.10. 일본 칙령 제259호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감옥의 직원인 한국인의 임용·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	1910.10. 제령 제7호 '조선인인 조선총독부재판소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
학력 시험	제1조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단, 법관전고위원회의 전고를 거침) 1. 법관양성소 2년 이상 과정 졸업자, 국내외 법률학교 3년 이상 과정 졸업자	제1조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 1. 사법시험 합격자 3. 법관양성소 졸업자 4. 외국대학 법률과 졸업자 ※3.4는 법관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침	제1조 일본의 제국대학, 전문학교 또는 한국의 관립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학한 한국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통감부판사·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제국대학,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년 이상 법률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판사, 검사, 변호사		2. 신 재판소의 판사·검사직에 있던 자 <부칙>		<부칙> 본령 시행 시 현재 통감부판사·검사인 조선

7)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정에 관해서는, 문준영, 앞의 책, 363면 이하.

경력자	2. 각 재판소의 전임 판사.검사로 1년 반 이상 재직자	제4조 당분간 다음의 자격자를 판검사로 임용 1. 신 재판소가 아닌 재판소의 판사.검사로 2년 이상 재직자 2. 2년 이상 변호사 재직자		인은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법부 칙. 주임관	3. 법부 민사국.형사국의 국.과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1년 반 이상 교수자	3. 현재 법부 주임관 이상의 직에 있거나 2년 이상 재직자	<부칙> 본령 시행 시 한국 법부의 칙.주임관인 한국인은 본령 시행 즈음에 한하여 통감부 판사.검사로 특별 임용할 수 있음.	
판임관	4. 법부 민사국.형사국의 주사, 평리원.한성재판소 주사로 4년 이상 근무자	4. 2년 이상 법부주사 또는 재판소서기로 재직하고 현재 판임관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		
기타	※ 위 재학.재직기간에 못 미치는 자는 법관전고세칙(1906.11. 법부령 제5호)에 따라 '법관시험'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 가능. 제2조 법률에 밝고 사무에 능숙한 자		※ 신 재판소의 판검사로 재직하는 한국인은 1909.10. 일본 칙령 제255호 '통감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부칙에 따라 통감부 판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 '1910.10.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선인은 같은 제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

<표 2> 신 재판소~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 일본인의 사법관 임용 관련 법령 및 임용 자격의 변화

구분	신 재판소 시기	통감부재판소 시기	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
관련 법령	1907.12. 한국정부 내규 '일본인법관임용내규'	1909.10. 일본 칙령 제255호 '통감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1910.10.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일본 재판소 구성법에 따른 유자격자	제1조 다음 자격의 1이 있는 자 1. 일본에서 판사, 검사, 사법관 시보 자격이 있는 자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판사, 검 사, 사법관시보 자격이 있는 자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시보 자격이 있는 자(1913.4. 제령 제5호 개정: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로서 1년 반 이상 실무를 수 습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판사.검사 재직자		<부칙> ① 본령 시행 시 한국의 판사.검 사 재직자는 본령 시행 즈음에 한하여 통감부판사.검사로 특별 임용할 수 있음.	<부칙> 본령 시행 시 통감부판사.검사 재직자는 본령 시행 시에 한 하여 총독부판사.검사로 특별 임용할 수 있음.
고등관	2. 일본 문관고등시험 합격증서 가 있는 자 3. 3년 이상 일본의 영사관, 이사 관, 부이사관 또는 경시 재직자		
판임관	제2조 3년 이상 일본의 사법성, 본국의 법부, 양국의 재판사무 를 처리하는 관청에서 판임 이 상의 관에 있거나 3년 이상 양 국에서 경부(警部)로 재직하며 현재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거 나 받은 자는 구재판소 판사.검 사로 임용할 수 있음. 제3조 전조에 의하여 판검사로 임용된 자는 3년 이상 재직한 후에야 상급재판소의 판검사로 보할 수 있음	② 3년 이상 재판소.통감부법무 원.통감부재판소 서기 또는 이 사청속(屬)으로 재직하며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는 본령 시행 후 2년간에 한하여 통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통감 부판사.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1920.7. 제령 제11호 '조선총독부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3년 이상 판임 이상의 관에 재직하며 사법사무에 종사하 고 판임관 5급봉 이상의 봉급 을 받은 자로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는 당분간 지방법원 지청 판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1907년 12월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새로운 '재판소구성법'은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을 모델로 삼아 재판소의 종류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구재판소(區裁判所)의 4종으로 하고 4급 3심제 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1908년 8월 1일의 재판소 사무 개시 시점까지 일본인은 대심원장과 검사총장 이하 감독관 34명, 판사 74명, 검사 32명이, 한국인은 판사 36명, 검사 9명이 임명되었다.⁸⁾

신 재판소의 출범을 전후하여 판검사로 임용된 한국인은 1906년 10월 공포된 칙령 제63호 '법관전고규정'(法官銓考規程) 및 11월 법무령 제5호 법관전고세칙(法官銓考細則)에 의하여 임용되었다 할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한국통감은 부임 초기에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유보하고 일본인이 관여하여 서서히 한국 사법제도를 개량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 따라 1906년 6월 동경제국대학 교수 우메 겐지로(梅謙次郎)가 한국정부의 법률고문으로 초빙되고, 재판사무 개선을 위한 일련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중 '법관전고규정'과 '법관전고세칙'은 판사, 검사, 재판소주사(主事, 재판소서기에 해당)의 임용자격과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종래의 재판제도를 당분간 유지

8) 友邦協會 編, 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記錄, 東京: 友邦協會, 1966, 41-46면.

하는 가운데 그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재판소직원의 증원, 전임화(專任化) 및 전문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관전고규정’에서는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또는 국내외 법률학교에서 일정 연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판사·검사, 법부의 국장·과장, 법부나 재판소의 주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등을 법관전고위원회(法官銓考委員會)의 ‘전고’를 거쳐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관전고규정에서 정한 교육 연한이나 재직 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법관전고세칙’상의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관시험’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⁹⁾ 1907년 7월에는 ‘법관전고규정’이 개정되어 앞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외에도 법률에 밝고 사무에 능숙한 자를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 법관전고규정 제2조).

신 재판소가 사무를 개시한 후 7개월이 지난 1909년 4월 9일 공포된 칙령 제48호 ‘법관임용령’(法官任用令)은 종전의 ‘법관전고규정’을 폐지하고, 판검사 임용자격을 ‘사법시험’ 합격, 신 재판소의 판검사 재직 경력, 법관양성소나 외국대학 법률과 졸업이란 세 가지로 정하고, 경과조치로서 신 재판소 외의 재판소(즉, 신 재판소 창설 전의 재판소) 판검사, 법부의 국장·과장, 법관양성소 교관, 법부나 재판소 주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를 당분간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으로서 1909년 4월 법부령 제5호 ‘사법시험규칙’(司法試驗規則)이 제정되었다.¹⁰⁾ 참고로 같은 해 10월 13~16일에 제1회 사법시험 필기시험이 시행되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거쳐 10월 22일 제1회 사법시험 합격자 7명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6명이 10월 23일 판사로 임명되었다.¹¹⁾

9) 법관전고세칙 제2조에 따르면, ① 법관양성소에서 만 2년 미만 과정 졸업자, 내외국 법률학교에서 만 2년 이상의 과정 졸업자, ② 각 재판소 전임 판사와 검사로서 만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③ 법부 민사국·형사국의 국장이나 과장으로 만 1년 반 이상 계속 근무자,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만 1년 이상 계속 교수자, ④ 법부 민사국·형사국의 주사나 평리원·한성재판소 주사로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자, ⑤ 변호사로 만 1년 이상 계속한 자. 제3조에 따르면 법관시험 과목은, 행정법의 대의,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의 대의, 국제법의 대의, 경제학의 대의이다.

10) 1909년 4월 법률 제18호로 공포된 새로운 ‘변호사법’에서 종전의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을 변호사의 자격요건으로 한 점을 볼 때, ‘사법시험’이 판검사와 변호사의 공통자격시험으로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대한제국관보 제4416호, 1909.6.30. “第一回司法試驗日配定及處所와其他에對한公告”; 제4513호, 1909.10.25. “第一回司法試驗合格者”; 제4518호 1909.10.30. “敍任及辭令”, 국편 한국사DB> 대한제국관보.

이상과 같이 한국인 판검사의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신 재판소 시기에는 자격시험제를 통한 사법관 충원제도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당분간은 종전의 재판소와 법부에서 사법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판검사를 충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법관임용 제도가 정비, 운용되고 있었다.

한편, 신 재판소에서 임용하는 일본인 직원의 임용에 관해 1907년 12월 한국정부의 내각회의에서 ‘일본인법관임용내규’(日本人法官任用內規)가 제정되었다.¹²⁾ 같은 내규는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유자격자 및 사법사무 취급의 경험이 있는 고등관·판임관 등을 한국재판소의 판사나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제1조에 따르면, 일본에서 판사·검사·사법관시보 자격이 있는 자, 일본에서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한 자, 3년 이상 일본의 영사관·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경시(警視)로 재직한 자 중에서 한국 재판소의 판사나 검사로 임용한다. 제2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한국의 법부 또는 양국의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에서 판임 이상의 관에 있거나 3년 이상 양국에서 경부(警部)의 직에 있으며 현재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거나 받은 자를 ‘구 재판소’의 판사나 검사로 임용할 수 있고, 제3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판사나 검사로 특별임용된 자는 3년 이상 재직한 후가 아니면 상급재판소의 판사 또는 검사로 보하지 못한다.

사법사무와 관련된 관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로 요건을 정하고 그 보직을 구(區)재판소 판검사로 제한한 것은 1920년 제령 제11호의 내용과 거의 같다. 즉, 이미 1907년의 위 내규에서부터 일본인 사법관은 일본 재판소구성법상 유자격자를 임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유자격자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최하급 재판소 판검사의 일부는 재판소서기 경력자에서 충원하는 특별임용제도가 마련되어 있던 것이다. 참고로, 1907년 1월 각급 재판소에 배치된 일본인 법무보좌관보(補) 12명

12) 法部大臣 趙重應→內閣總理大臣 李完用, 請議書 第39號 “法部大臣請議日本人法官任用內規”, 1907.12.25., 奎245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book/view.do>) 검색자료. 1920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 제정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본국 정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일본인법관임용내규’ 제2조가 인용되어 있다. “朝鮮總督府判事ノ特別任用ニ關スル制令案”,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1200184500, 公文類聚·第四十四編·大正九年·第十五卷·官職十四·任免二·服役懲戒·雜載, 族爵, 儀典(國立公文書館). 이하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https://www.jacar.go.jp>)에서 검색한 자료는 같은 센터 웹페이지에서 해당 검색자료에 관해 제시된 인용례에 따라 출처를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은 사법관 자격이 있는 법무보좌관들과 달리 일본에서 재판소서기로 근무하다가 병용된 자들인데, 신 재판소 출범 후 전원이 각지의 '구재판소 판사'로 임용되었다.¹³⁾ 이는 위 내규 제2조에 따른 임용 실례라 할 것이다.

2. 통감부재판소 시기의 사법관 임용제도

한국 사법사무의 일본 위탁에 따라 1909년 10월 16일 칙령(일본 칙령, 이하 같음) 제 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됨에 따라 재판소의 조직, 직원 임용에 관한 법령이 한국의 법령에서 일본의 법령으로 바뀌고, 일본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유자격자, 한국재판소의 판검사 재직자, 기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및 특별 임용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선총독부재판소 시기의 사법관 임용제도는 이 통감부재판소 시기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었다.

먼저, 통감부재판소의 판검사로 임용될 자의 자격에 관해 1909년 10월 16일 칙령 제 255호로 공포된 '통감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統監府判事及檢事ノ任用ニ關スル件)은, 통감부재판소의 판검사는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 시보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 2개 조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먼저, 부칙 제1항에서 본령 시행 시 현재 한국재판소의 판사·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본령 시행에 즈음한 때에 한하여 통감부판사와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 재판소구성법상의 자격 없이 한국의 재판소 판검사로 임용되었던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통감부재판소 판검사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2항에서는 3년 이상 재판소·통감부법무원·통감부재판소의 서기의 직에 있던 자 또는 3년 이상 이사청속(理事廳屬)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는 본령 시행 후 2년간에 한하여 통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통감부재판소의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정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한 재판소서기 등을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1907년의 '일본인법관임용내규' 제2조의 임용제도의 취지와 같다. 이 부칙 제2항의 특별임용을 위해 '통감부판사통감부검사특별임용시험규칙'(1910.4.23. 통감부령 제15호)이 제정되었다. 1920년 제령 제 11호는 바로 이 칙령 부칙 제2항을 부활시킨 것이었다.

13)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9집, 2012, 458면에 수록된 법무보좌관 명단 및 이력 참조.

아울러,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감옥의 직원인 한국인의 임용·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1909.10.16. 일본 칙령 제259호)에 의해 한국인을 통감부재판소 판검사와 서기 등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제국대학, 전문학교 또는 한국의 관립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학한 한국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통감부판사·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10년 제령 제7호로 계승되었다.

3. 병합 후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의 정비

(1) 1910년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1) 재판소구성법상 유자격자를 위한 임용제도

1910년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은 앞서 본 1909년 칙령 제255호 '통감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의 본조와 부칙 제1항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취하고 있다. 제령 제6호의 제1조는 일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시보 자격을 가진 자, 즉 재판소구성법상의 유자격자에 준하는 자격자를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이고, 부칙은 통감부재판소 판사·검사 재직자를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1909년 칙령 제255호와 다른 점은 제령 제6호에서 제2조를 추가하여 조선총독부판사로 재직하는 자를 조선총독부검사로, 조선총독부검사로 재직하는 자를 조선총독부판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 판사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판사로 전관(轉官) 임용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판검사 임용자격 자체를 특히 정한 것은 아니었다.

위 제령 제6호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판검사등용시험규칙'(1891.5. 일본 사법성령 제3호)에 따른 제1회 시험에 합격하고 시보로서 일정 기간 재판소와 검사국에서 실무수습을 한 후 제2회 시험에 합격하여야 했다.¹⁴⁾ 재판소구성법 제65조에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마련되어 있는

14) 일본 재판소구성법 제57조~제60조. 판검사등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성년 남성으로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3학년 이상의 법률학과를 졸업한 자, 사법대신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교 등의 졸업자에 한하였다. 제1차 시험은 예비시험(논문, 외국어)과 본시험(민법, 상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의 필기시험 및 그중 3과목의 구술시험) 및 신체검사로 이루어졌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관시보로 채용되어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시험을 치

데, 먼저, 3년 이상 제국대학 법과 교수 또는 변호사 재직자는 위 시험을 거치지 않고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고, 다음으로, 제국대학 법과 졸업생은 제1회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보로 임명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제국대학 법과 졸업생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곧바로 사법관시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판검사등용시험은 주로 사립학교 출신자의 재조법조 등용문으로 이용되고 있었다.¹⁵⁾

조선총독부는 위 제령 제6호의 제정 시점에는 사법관시보제도를 두지 않고 '사법관시보 자격이 있는 자'(즉, 판검사등용시험 제1회 시험 합격자 또는 제국대학 법과 졸업자)를 곧바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사법관시보 자격만 갖춘 자를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칙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4월 제령 제4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5호로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을 각각 개정하여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본국의 사법관임용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법관시보 자격자 중에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를 선발하여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서 최종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명하게 되었다.¹⁶⁾

1923년 3월부터 일본에서 '고등시험령'(1918.1. 일본 칙령 제7호)이 시행되어, 종래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각각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조 자격시험을 '고등시험 사법과 시험'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제국대학 출신이 누리던 시험 면제의 특혜도 폐지되었다. 고등시험령 시행 후에는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사법관시보로서 실무수습 및 시험을 통과한 자가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참고로,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1910년 제령 제6호에 의해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는 1922년 12월 9일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보임된 김시두(金時斗)이다. 그는 교토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하여 사법관시보 자격을 취득하고 1921년 5월 12일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었다.¹⁷⁾ 1926년 3월 공주지법 판사로 임명된 양원용(梁源容), 1928

렸다.

15) 메이지대학사자료센터 편, 메이지대학 소사, 메이지대학, 2011, 27면.

16) 1913.5.2. 총독부령 제45호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실무수습 및 시험규칙'

17) 전병무, 앞의 책, 48면.

년 3월 경성지법 판사로 임명된 김영환(金泳煥)도 교토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로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를 거쳐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¹⁸⁾ 공교롭게도 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 자격으로 곧바로 사법관시보가 된 조선인 3명이 모두 교토제국대학 졸업자이다.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고문 사법과 시험에 합격하고 조선총독부 사법관 시보를 거쳐 사법관으로 임명된 자는 조진만(趙鎭滿)이다. 조진만은 경성전수학교의 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제1회 졸업생(1923년 3월)으로서 1925년 고문 사법과 시험에 합격하고, 1926년 8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1927년 12월 해주지법 판사로 임명되었고, 1939년 8월에는 조선인 최초로 부장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되었다.¹⁹⁾

한편, 위 제령 제6호의 부칙은 '본령 시행 시 통감부재판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는 본령의 시행에 즈음한 때에 한해 특별히 이를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본 1909년 10월 칙령 제255호 본칙 및 부칙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통감부재판소 판검사로 임용된 자를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계속 임용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 제령 제6호의 부칙의 문언에서 특별히 민족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적용될 것 같지만, 후술하는 1910년 제령 제7호 부칙에서 통감부재판소 판검사인 조선인을 조선총독부재판소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제령 제6호의 부칙은

18) 양원용과 김영환은 전병무, 앞의 책, <부록 2>, 350면에 실린 “고문 사법과 조선인 합격자 명단”에는 없다. 두 사람은 일본관보에서 1923년 3월 교토제국대학 법률학과 학사시험(學士試驗)에 합격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본관보 제3114호, 1923.5.26. “學事”, 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 양원용은 교토대학을 졸업한 해인 1923년 12월 6일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398호, 1923.12.10. “敍任及辭令”. 김영환은 졸업 후 3년이 지난 1926년 6월 30일에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160호, 1926.7.2. 敍任及辭令. 김영환의 사법관시보 임용시점이 1926년이란 점에서 그 임용자격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28년 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관시보 김영환을 경성지법 판사로 서임하는 건으로 조선총독에 상신한 문서에 김영환의 임용자격이 “메이지43년(1910년) 제령 제6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첨부서류로 “이력서” 외에 “제국대학 졸업증서 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고문 사법과 시험 합격증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김영환은 제국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사법관시보로 임용된 것이 할 것이다. 法務局長→總督, “高等官任敍ノ件內申”, 1928.2.18.,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2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25),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

19) 전병무, 앞의 책, 70면, 112면. 참고로, 1927년 12월 조진만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판사 신규임용 관계 문서에서 첨부서류로 이력서, 시험합격증서, 제국대학 졸업증서사본 등이 기재되어 있다. 法務局長→總督, “高等官任敍ノ件內申”, 1927.12.14.,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2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18).

사실상 일본인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의 폐지

1909년 칙령 제255호와 1910년 제령 제6호에 의해 각각 설정된 사법관 임용제도 사이에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는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의 채택 여부에서 나타난다. 1909년 칙령 제255호 부칙 제2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재판소서기 중에서 판검사를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10년 제령 제6호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다. 이 점을 볼 때, 조선총독부는 병합 직후 조선총독부 사법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사법관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재판소 시기 이래 시행되어 온 변칙적 임용제도는 더는 채용하지 않고, 앞으로 조선총독부 사법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제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령 제6호 제1조에서 정한 유자격자 중에서 충원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령 제6호에서 종래의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 제도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²⁰⁾ 다만, 이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는 병합 후 종래 한국에 대해 서구 열강 제국이 보유하고 있던 치외법권(즉, 영사재판권) 철폐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은 언급해두고 싶다.

병합 후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에 관한 선언’에서 제외국 정부에 대해 일본과 제외국 사이의 현행조약은 그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선에 적용되며 조선에 재류하는 제외국인은 일본의 법권(法權)하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본국에서와 동일한 권리와 특전을 누리고 적정한 기득권을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였다.²¹⁾ 한국에 대해 열강이 보유하고 있던 치외법권이 병합 후 결국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몇몇 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특히, 미국은 아직 조선에서의 법과 재판제도가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미국의 치외법권은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까지는 폐지되지 않는다

20) 참고로,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가 본국 내각에 1910년 제령 제6호 및 제령 제7호의 제령안을 제출하며 첨부한 이유서에는 “판검사의 임용자격은 법률에 갈음하는 명령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統監 寺內正毅→內閣總理大臣 桂太郎, “統監府裁判所令中ヲ改正シ朝鮮總督府判事及檢事ノ任用ニ關スル件朝鮮人タル朝鮮總督府裁判所職員ノ任用ニ關スル件及明治四十三年制令第一号ニ依ル命令ノ區分ニ關スル件ヲ定ム”, 1910.9., 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1200063300, 公文類聚・第三十四編・明治四十三年・第二十一卷・司法門・裁判所(裁判所構成)・民事・刑事(國立公文書館).

21) 朝鮮總督府法務局法務課, 朝鮮の司法制度, 朝鮮總督府法務局, 1936, 17면.

는 태도였다.

1910년 9월 1일, 미국 국무부는 주일 미 대사관에 보낸 문서에서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의 관할하에서 일본의 현행법 및 재판제도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법과 재판으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 영사재판권이 유지되거나, 일본정부가 고도의 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법원, 즉 고등법원, 공소원, 8개 지방재판소에서만 미국 시민이 일본 법률하에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고 하였고, 9월 20일 주일 미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의 의견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였다.²²⁾ 10월 6일 일본 외무성은 답신에서 조선에 일본의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외국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관계하는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구성과 판사의 자격은 일본 본국과 본질적으로 동일”(“in all cases in which foreigners are interested as plaintiffs, defendants or accused, the organization of the competent Courts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 sitting Judges, are essentially the same as in Japan Proper.”)하며 일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본국의 재판절차와 실무가 한국에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다.²³⁾ 미국의 영사재판권 폐지 조건을 둘러싸고 미일 간의 교섭 과정에서 1910년 11월 제령 제9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6조가 개정되어 어느 지방재판소나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게 된 제1심의 형사소송사건을 전국 어디든 동등한 재판소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미일 간의 교섭 중에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임용 자격을 직접 언급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조선에 출장하여 조선의 상황을 조사한 주일 미 대사관 직원 슈일러(Schuyler)는 “조선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의 능력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판사 다수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다”고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²⁵⁾ 또한, 1910년 9월 일본 정부에 전달된 미 국무성의 의견 중에는 미국 시민에 관계

22)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Tokyo, 1910.9.14., 895.00/486,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ecretary(09/1789-); Note to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1910.9.20. No. 491. Enclosure withe Mr. O'Brien's No. 1256 of 110.10.4, 895.00/513, Central Decimal Files, 1910-1963,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23)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Mr. O'Brien, Enclosure withe Mr. O'Brien's No. 12. of 1910.10.14. 895.00/517, 위 문서철.

24) 병합 후 한국에서의 치외법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교섭 및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에 관해서는, 안종철, “‘한국병합’ 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치외법권 폐지교섭과 타결”,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제36호, 2007, 50면 이하.

25) Report of Mr. Schuyler as to the effect upon American Interest of the Rece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of Korea, 1910.10.12. 앞의 자료(895.00/517.)

된 민형사 소송사건은 지방재판소 이상의 상급법원이 취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는 구(區)재판소의 경우 미국 시민의 소송사건을 취급할만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

주일 미 대사관이 본국 국무성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치외법권 폐지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한 1910년 9월은, 또한 조선총독부가 '통감부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으로 변경하는 제령안 및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의 제령안을 제출하고 본국 내각의 심의가 이루어진 때이기도 하였다. 치외법권 폐지 후에도 '조선에 있는 외국인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본 본국에서와 동일한 권리와 특전을 누릴 것'이란 일본 정부의 약속은 재판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관계하는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구성과 판사의 자격은 일본 본국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미 그 제도의 변칙성이 인정되어 2년간의 한시적 시행이 예정된 1909년 칙령 제255호 부칙 제2항의 특별임용제도를 병합 후에 그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구적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⁶⁾

(2) 1910년 제령 제7호, 조선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

1910년 제령 제6호와 같은 날 공포된 제령 제7호 '조선인인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은 1909년 칙령 제259호 '통감부재판소 및 통감부감옥의 직원인 한국인의 임용·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 중 판사와 검사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국대학이나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3학년 이상의 법률학과를 수료하고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1911년 1월 조선총독부고시 제7호에 의해 지정된 법률학교는 모두 일본의 사립대학이고, 조선에 있는 전문적 법학교

26) 한편, 치외법권의 존재 및 그 폐지 문제는 병합 전후 한국인(조선인) 사법관의 직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통감부재판소령 제25조는 한국인 판사와 검사는 민사에서 원고와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형사에서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법률에 따른 사법관 자격이 없는 한국인 판검사가 일본인 관계 사건이나 외국인 관계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비(대일본제국헌법에 규정된 '법률이 정한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신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및 열강의 치외법권 폐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건 조성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합 후에도 조선인 판검사의 직권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910년 제령 제5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25호) 3.1 운동 후인 1920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조선인 판검사의 직권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1920.3.24. 제령 제3호).

육기관으로는 관립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가 유일하였다. 참고로 당시 판검사등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성년 남성으로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3학년 이상의 법률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주어졌다는 점에 비추보면, 대략 판검사등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준하여 특별임용자격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령 제7호의 문언을 읽으면, 마치 일정한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을 전형을 거쳐 곧바로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의 임용사례를 보면, 제령 제7호는 최소한의 학력 요건을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 같은 제령에 따라 임용된 자는 모두 소정의 학력 요건을 채운 후 조선총독부재판소의 서기검통역생이나 경성전수학교 교관 등 법률관련 사무에 종사하다가 전형을 거쳐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별임용자의 절대다수가 서기검통역생 출신이라는 점은 마치 1920년 제령 제11호가 조선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1920년 제령 제11호는 조선인과 무관하였다.

그런데 제령 제7호의 학력 요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바로 관립전문학교와 지정 사립학교 외에도 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을 판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제령이 제정된 당시 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의 경우 재판소구성법과 위 제령 제6호에 의해 판검사등용시험 제1차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령 제7호는 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에 대한 특별임용의 경로로 마련해 놓았다. 통감부 재판소 시기에 1909년 칙령 제255호로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유자격자를 통감부 판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둔 것과 별도로 칙령 제259호를 통해 제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을 통감부 판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시점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신민(臣民)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병합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조선인도 똑같이 일본신민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령 제7호에 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에게 제령 제6호의 일반임용 외에 제령 제7호의 특별임용이라는

27) 병합 전 한국인은 일본의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일본의 제국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인 한국인이 일본신민에 적용되는 재판소구성법, 판검사등용시험, 문관임용령 등에 따라 사법관시보나 판검사 임용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제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이라도 결국 한국인의 통감부재판소 직원으로의 특별임용 근거를 제공하는 1909년 칙령 제259호에 의해 비로소 통감부재판소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지, 즉 일반임용제도에서 예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하는 '전형'을 거쳐 곧바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에게는 제령 제6호에 의한 임용을 예정하지 않고 제령 제7호에 의한 임용경로만 제공하려는 취지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특별임용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후자의 질문 자체를 떠올려본 적이 없고 또 현 시점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자의 의도라고 하면, 제국대학 졸업자인 조선인이 사법관시보와 실무시험 합격 등의 일반임용 경로를 밟지 않고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을 위해 행하는 '전형'에 응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제국대학 졸업자에게 일반임용 경로 외에 특별임용 경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유나 그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가늠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가 시기적으로 병합 직후에 제정되었으며 제령 제7호가 그 법령명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아닌 '조선인인 판검사'의 임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는 통감부재판소 시기 일본인 사법관 임용제도(1909년 칙령 제255호)와 한국인 사법관 임용제도(동년 칙령 제259호)를—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를 제외하고—일단은 거의 그대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안되었고, 그 가운데 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를 포함하여 조선인의 사법관 임용방법을—어쩌면 심각한 검토 없이—제령 제7호로 일괄 규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령 제7호는, 적어도 해당 제령이 입안되었을 시점에는, 단순히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선인을 위한 '특별' 임용제도가 아니라, '일본인 유자격자'를 위한 임용제도(제령 제6호)와 나란히 '조선인 일반'(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생도 포함됨)을 위한 임용제도를 설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통감부재판소령 제25조와 이를 이어받은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25조에서 조선인 판사의 직권을 조선인이 양 당사자인 민사소송사건 및 조선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으로 제한하였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의 경우 설사 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25조가 적용되는 한 그 직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국대학 졸업자인 조선인을 같은 자격의 일본인과 동등하게 제령 제6호에 의해 사법관으로 임용하고서 조선인 판사의 직권만을 조선인 관계 사건의 재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권 차별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

에서 제령 제7호로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경로 일반을 규정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1910년 제령 제6호는 본래는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1920년대부터 조선인도 제령 제6호에 의해 임용되었다는 사실과 충돌한다. 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의 유화정책에 의해 1910년 제령 제6호를 조선인에게도 적용하였다는 식의 설명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자의 연구가 미진하여 이 문제에 관해 더 논의를 진척시킬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병합 초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사법관 충원정책의 성립 및 전개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점과 함께,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피지배 원주민을 위한 판검사 특별임용제도가 채용된 곳이라는 점이다. 식민지 대만의 경우 대만총독부법원조례(臺灣總督府法院條例, 1896.7.19. 공포 율령 제16호)에서 '재판소구성법에서 판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판관(判官)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5조 ③), 대만 원주민을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대만총독부법원 서기 등을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대만인은 일본 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참고로, 대만인이 최초로 대만총독부법원 판관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1931년이다.²⁸⁾ 관동주(關東州) 조차지에서도 관동주법원의 '판관 및 검찰관은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판사 또는 검사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였다.²⁹⁾ 관동주의 면적과 인구, 관동주법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특별임용제도는 처음부터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 신 한국재판소 이래 한국인과 일본이 직원이 혼합된 재판소가 조직되었고, 1909년의 사법권 위탁 각서에서도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하도록 하였으며(같은 각서 제2조), 병합의 명분, 조선의 인구, 소송당사자의 민족별 인구 구성 등을 고려한다면, 1909년 칙령 제259호에서 마련된 한국인 재판소조직원의 특별임용제도를 병합 후에도 유지하고, 민족구분에 따라 임용자격, 경로와 정원을 구별·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웠다고 할 것이다.

28) 대만 사법원(司法院) 홈페이지 > 沿革及史料 > 日治時期法律人員, <https://www.judicial.gov.tw/tw/cp-1964-211912-cdda4-1.html>.

29) 1906.7.31. 칙령 제201호 '관동도독부법원 판관 및 검찰관 임용령'(關東都督府法院判官及檢察官任用令).

Ⅲ. 1920년 제령 제11호의 제정과 민족별 특별임용제도

1. 1920년 제령 제11호,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

1920년 제령 제11호 ‘조선총독부판사 특별임용에 관한 건’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지방 법원지청의 판사에 보할 자에 한하여 당분간 5년 이상 판임관 이상의 직에 재직하며 사법사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총독이 정하는 고시(考試)를 거쳐 이를 특별임용할 수 있다.³⁰⁾ 8월 총독부령 제108호로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규칙’이 제정되고, 그해 가을 제1회 특별임용고시가 시행되었다.

총독부는 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의 취지에 대해 “총독부재판소는 태반 벽지에 치우쳐 있어 생활상의 불편이 심하고 이에 정규의 자격을 갖는 판사를 보임하려 해도 다수는 그 직을 불편하게 여겨 직원의 배치상 항상 곤란함을 느낄 뿐 아니라, 이들 재판소는 그 사무가 대개 간이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는 심오한 법률학의 소양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당분간 재판소서기, 기타 사법사무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전형하여 그 보충을 도모”한다고 하였다.³¹⁾

총독부는 이 제령안을 본국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이유서와 참고자료를 첨부하였다. 아마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7호가 제정된 이래 조선인 사법관에 한해서는 특별임용제도를 운용하되 일본인 사법관은 모두 정규자격자 중에서 임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음에도 이제 와, 더구나 이른바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시정이 추구되고 있는 때에, 다시 변칙적인 특별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총

30) 한편, 제령 제11호의 규정은 1920년 5월 칙령 제160호로 공포한 ‘주임문관특별임용령’의 문장을 단어 하나만 바꾸고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주임문관특별임용령’은 종래 개별적으로 제정된 수십 개의 특별임용령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일정한 “주임문관은 5년 이상 판임 이상의 관에 재직하여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판임관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를 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이를 임용할 수 있다.” 열거하고 있는 주임문관은 전매, 세무, 관세, 재판소서기, 감옥, 제철, 삼림, 도량형, 체신, 금융, 철도, 의료 등과 관련된 일본본국, 조선, 대만, 관동, 화태(樺太)의 관리들이었다.

31) 조선총독부가 1920년 6월 7일 상주한 같은 제령안의 이유(理由), “朝鮮總督府判事ノ特別任用ニ關スル制令案”,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1200184500, 公文類聚・第四十四編・大正九年・第十五卷・官職十四・任免二・服役懲戒・雜載, 族爵, 儀典(國立公文書館).

독부가 제출한 제령안 설명서에서 “단순한 이상론(理想論)의 견지에서 특별임용제를 시대의 진운(進運)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 없지 않지만, 이는 조선의 실정에 밝지 않은 공론(空論)”이라고 한 대목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조선의 실정에 대해 총독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병합 전에 판검사로 특별임용되어 총독부재판소에서도 계속 판검사로 보임된 자는 애초 83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45명에 불과하고 그 수는 앞으로 퇴관, 사망 등으로 인해 더욱 감소할 것인데, 그 궤위를 보충하려 하여도 대학 졸업자, 기타 정규자격을 가진 판검사 중에서는 기꺼이 그 자리로 가려는 자가 없고, 최근에는 벽원지로 전보(轉補)하는 내명(內命)을 받자마자 곧바로 사직하거나 근무지에 부임한 직후 갑자기 퇴관해버리는 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총독부는 네 가지 점을 들어 특별임용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벽지에 소재한 지방법원 지청 판사의 결원을 정규자격의 사법관으로 보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법원 지청의 절반인 30개소에는 정규의 검사를 배치하지 않고 경찰관인 경시(警視)나 경부(警部)에게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직무를 맡기고 있어서 검찰사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들 지청에 신속히 전임의 검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나 일시에 정규자격자를 다수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차제에 판검사 임용의 문호를 개방하여 정규자격자 외의 다른 방면에서도 적당한 인물을 채용하여 신속히 지청 검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 상황에 비춰 가장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판임관은 수년간 사무에 종사한 후 각종 고등관으로 승진하는 길이 있으나, 재판소서기는 재판소서기장(이 시기 조선총독부재판소에서는 정원 4명)으로 승진하는 것 외에 달리 고등관으로 영달할 길이 없으므로 유능한 재판소서기가 오래 재직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세의 지위를 찾는 것이 근시의 현저한 경향이므로 그들을 위해 특별임용제도를 마련하여 그 앞길에 빛이 있음을 보여주면 유능한 서기를 유치하고 붙잡아둘 수 있게 되어 사법사무의 개선에도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넷째, “이 제도는 일찍이 구 한국정부 시대 및 통감부 시대에 그 선례가 있으며, 현 제도 하에서 조선인 판검사에게는 이미 특별임용제도의 길을 열었고 더욱이 이들 판검사 중에는 한 명의 유자격자도 없고 전부 특별임용자인 점에 비춰 내지인(內地人)에 대해 이제 특별임용제도를 두려는 것은 피차의 비교상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전의 신 한국재판소 및 통감부재판소 시기의 선례를 거론하고 조선인에 대한 특별임용제도를 언급하며 “내지인에 대해” 특별임용제도를 두려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총독부가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로써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제령 제11호는 신 한국재판소와 통감부재판소 시대에 시행하였던 특별임용제도를 부활시킨 것이자 종래 조선인에만 열려있던 특별임용의 길을 일본인에게도 확대하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제령 제11호는 처음부터 '당분간'만 시행된다는 불안정한 제도로써 출발하였다. 후술하듯이 이 제도는 1928년까지 47명의 일본인 특별임용자를 배출하고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 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1925년 5월 개최된 사법관회의에서 각 북심법원장 및 각 지방법원장이 “1920년 7월 제령 제11호 조선총독부판사 특별임용에 관한 건은 시운의 진전에 따라 될수록 신속히 폐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제출하였다.³²⁾

본령 발포 이래 재판소서기가 고시를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지방법원 지청의 내지인(內地人) 판사의 태반은 특별임용의 판사로 채우는 데 이르렀음. 이리하여 판사 유자격자의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급재판소의 결원을 보충하려는 하는 경우 그 선발·서임[選敍]에 곤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판소서기 중 극히 숙달되고 못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를 찾으려 하여도 그 수가 점차 부족함을 호소하는 데 이르러 재판사무의 향상·발전을 기하는 데 유감이 적지 않음. 생각건대, 본령은 당시 응급의 필요에서 생긴 것으로 설령 지금 갑자기 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상의 정세(情勢)에 비취 이를 운용하는 데는 지금보다 점차 절제를 가하고 그럼으로써 될수록 신속하게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본래 이 제도는 지청 판사로 보임할 유자격 일본인 판사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능한 재판소서기를 재판소에 붙잡아둘 유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었으나, 위 건의안은 오히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임용자가 많아진 만큼 유자격 판사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자격 판사로 보임해야 할 상급법원의 판사를 충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능한 서기들이 판사로

32) 各地方法院長總代 京城地方法院長 岡本正夫, 各覆審法院長 總代 京城覆審法院長 子爵眞鍋十藏→朝鮮總督 子爵 齋藤實, 覆庶秘 第252號 “朝鮮總督府判事ノ特別任用ニ關スル制令廢止ノ 建議”, 1925.6.6., 法務局人事係, 自大正十二年至昭和三年 極祕書類綴, 법무국 인사계, 극비서류철, 1923-192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259).

특별임용되어 서기과를 나가버리므로 정작 유능한 재판소서기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청 판사의 구인난이란 응급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임용제로 인해 일본인 판검사와 재판소서기의 원활한 충원과 인사관리 및 재판소서기과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장 요시타 헤이지로(吉田平治郎) 역시 사법협회잡지(司法協會雜誌) 1926년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에서는 서기는 일정한 고시를 거쳐 판사로 임관하는 길이 있지만, 이러한 변칙의 제도는 머지않아 폐지될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³³⁾ 위 건의가 있었던 1925년까지 41명의 일본인 재판소서기가 판사로 특별임용되었으나, 1926년과 1927년에는 특별임용자가 없고, 1928년 6명의 특별임용을 끝으로 이 제도는 더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아래의 IV. 1. <표 5>).

제령 제11호에는 특별임용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어서 마치 일본인과 조선인 구별 없이 특별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제령안 설명에서도 나타나지만, 다음에서 살펴보는 자료들은 1920년 제령 제11호는 일본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이며, 특별임용제도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2. 조선인과 일본인 특별임용 근거 및 임용 고시의 구별

1936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판사의 정년(일반 판사 60세, 고등법원장 63세)을 본국 판사의 정년(일반 판사 63세, 대심원장 65세)과 일치시키는 취지의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안을 본국 내각에 제출하였는데,³⁴⁾ 해당 개정안에 붙인 이유설명에는 다음과 같

33) 大邱地方法院長 吉田平治郎, “裁判事務の現状と親切なる努力”, 司法協會雜誌 第5卷 第4號, 1926, 84면.

34) 본래 일본의 판사는 종신으로 임관하고, 신체나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사법대신이 공소원 또는 대심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을 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일본 재판소구성법 제67조, 제75조). 1921년 5월 법률 제10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어 대심원장은 65세, 기타의 판사는 63세로 정년을 정하고, 공소원 또는 대심원의 총회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년연장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제74조의 2), 검사에게도 정년제를 도입하여 검사총장의 정년은 65세, 기타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하였다(제80조의 2). 이러한 본국의 제도 개정에 뒤따라 조선총독부는 1921년 8월 15일 제령 제12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판사에 한해 정년제를 도입하여 고등법원장의 정년은 63세, 기타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정년에 달하더라도 고등법원 총회의 결의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26조의6).

은 내용이 있다.³⁵⁾

…… 당시 조선은 내지와 달라 판사의 임용자격이 다양하여 재판소구성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도 있고, 또는 (가) 한국의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1909년 10월 칙령 제255호에 의해 통감부판사나 검사로 임용된 자가 있고, (나) 1910년 10월 제령 제7호에 의해 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된 조선인이 있고, 또는 (다)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해 조선총독이 정하는 고시를 거쳐 임용된 자가 있어 그 소질이 서로 같지 않음. (중략) 지금은 위 특별임용된 판사 중 (가)에 해당하는 자는 겨우 3명이 있을 뿐이고, (나)에 해당하는 자는 1933년, (다)에 해당하는 자는 1928년부터 모두 이를 임용하지 않고 있고, 금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점차 감소하는 길이 있을 뿐임.

위 설명에서 총독부는 (나)의 1910년 제령 제7호와 (다)의 1920년 제령 11호에 의해 특별임용된 사법관을 구분하고 각각의 경로로 특별임용된 자가 1936년 현재 몇 명 남아 있는지 말하고, 1910년 제령 제7호에 의한 특별임용은 1933년부터,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한 특별임용은 1928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관보에서 판검사 신규임명 사령을 조사하면, 일본인의 특별임용은 1928년 7월 31일 일본인 재판소서기 2명을 판사로 임명한 것이 마지막이고,³⁶⁾ 이후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재판소서기·통역생에서 판사로 특별임용된 자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두 가지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된 시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해 별도의 특별임용시험이 시행되었고 임용자격도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협회잡지 1권 6호(1922년), 2권 12호(1923년), 4권 4호(1925년), 7권 4호(1928년)의 ‘잡보(雜報)’란에는 1922년 5월, 1923년 말, 1925년 4월, 1928년 4월에 각각 시행된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에 최종합격한 25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³⁷⁾ 명단에 실린 자들은 1922년 7월부터 1928년 7월 사이에 재판소서기에서 총독부판사로 특별임용된 일본

35) 朝鮮總督 南次郎→內閣總理大臣 廣田弘毅, “朝鮮總督府裁判所令中改正の件”, 1936.11.19.,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14090064400,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ノ部(內規ヲ含ム)第二卷(M-1-1-0-1_8_002)(外務省外交史料館)

36) 1928.7.31. “任判事,敍高等官七等 裁判所通譯生兼判所書記勳八等 山中忠太, 任判事,敍高等官七等 裁判所書記勳八等 菊川惇”, 조선총독부관보 제482호 1928.8.6. 敍任及辭令.

37) 司法協會雜誌 第1卷 第6號, 1922, 98면; 第2卷 第12號, 1923, 112면; 第4卷 第4號, 1925, 114-115면; 第7卷 第4號, 1928, 98면.

인 25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1925년 4월과 1928년 4월 시행된 특별임용고시를 각각 ‘제6회’와 ‘제7회’라고 하고 있는데, 1928년에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마지막 특별임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임용고시는 제7회가 마지막이라고 할 것이다.

이 특별임용고시가 총독부령 ‘조선총독부특별임용고시규칙’에 따른 고시임은 분명하다. 같은 규칙에서는 응시자격을 ‘내지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도 해당 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임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한 특별 전형에 응시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금 보았듯이 부분적으로 사법협회잡지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특별임용고시 합격자 명단에서 조선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조선인에게 응시가 허용되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문서에서는—1930년의 것이기는 하지만—일본인 재판소서기에 한정하여 특별임용고시의 응시자 및 임용추천자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1910년 제령 제7호는 일정한 학력 요건을 갖춘 조선인을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1912년부터 조선인 판검사가 특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어떤 ‘시험’ 형태의 전형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알 수 없다. 다만, 1920년대에는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朝鮮人司法官候補者考試)라는 명칭의 시험이 시행된 것은 자료상 확인된다.

사법협회잡지 2권 2호(1923)와 4권 4호(1925)의 ‘잡보’에는 1923년 2월과 1925년 4월에 시행된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 합격자 명단이 실려 있다. 1923년의 고시 합격자 6명 중에는 김병로 대법원장 재임기에 대법관(1952~1957)을 역임한 김동현(金東炫)이, 1925년 합격자 12명 중에는 제2대 대법원장(1958~1960)에 오르는 조용순(趙容淳)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1925년 4월 시행된 고시는 “제10회”이다.³⁸⁾ 1923년 5월 개최된 사법관회의 석상에서 마쓰테라 다케오(松寺竹雄) 법무국장은 “조선인판검사특별임용에 관해서는 고시를 행한 것이 이미 8회”라고 말하고 있는데,³⁹⁾ 위 사법협회잡지 2권 2호

38) “雜報 朝鮮人司法官候補者考試合格者”, 司法協會雜誌 第2卷 第2號, 1924, 52면. 司法協會雜誌 第4卷 第4號, 1925, 115면에서는 “제10회 조선인 사법관후보자는 응시자 49명에 대해 필기 시험의 결과 12명 통과, 4월 14일 법무국에 구술시험을 행하여 전부 급제하였음”이라 하고 있다.

39) 朝鮮總督府法務局 編, 總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 朝鮮總督府法務局, 1938, 178면. 한편, 본문에서 소개한 자료를 볼 때 해당 고시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라고 보아

(1923년 2월호)에 실린 합격자 명단은 제8회 고시의 합격자라 할 것이다.⁴⁰⁾ 매년 1회꼴로 고시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역산하면, 1916년이 제1회 고시가 시행된 때에 해당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이 고시가 시행되었는지를 자료상 확인할 수는 없다.

한편, 1927년과 1928년에 조선총독부 법무국 인사계에서 생산된 고등관 임용 관계 서류 중에는 판검사로 보임된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용자격’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는 1910년 제령 제7호 및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한 특별임용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었다. 이 서류에서 재판소서기·통역생에서 판사나 검사로 특별임용된 조선인 6명의 임용자격은 모두 ‘1910년(“明治43年”) 제령 제7호’로 기재되어 있다.⁴¹⁾ 반면, 재판소서기에서 지방법원 지청 판사로 임용된 일본인 2명의 임용자격은 ‘1920년(“大正9年”) 제령 제11호’로 기재되어 있다.⁴²⁾ 또한, 1931년 2월 후카자와 신이치로(深澤新一郎) 법무국장은 광주 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현재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해당)에 가까운 장래 판사로 임용될 예정인 재판소서기 윤철균(尹轍均)에 대해 임용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묻고, 만약 임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라면 윤철균에게서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 합격의 취지”를 기재한 자필 이력서 3부를 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³⁾

1930년 11월 후카자와 법무국장이 판사특별임용고시를 시행하고자 고등법원장·고등법원검사장 및 각 복심법원장·검사장에게 보낸 문서 역시 1920년 제령 제11호가 일본인의 특별임용을 위한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1928년 4월의 제7회 고시 이후 중단된 특별임용고시의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후카자와 법무국장은

도 무방할 것이지만, 마쓰테라 다케오 법무국장은 이 고시를 ‘鮮人司法官特別任用考試’라는 부르기도 하였다. 1927년 6월 사법관회의 석상 마쓰테라 법무국장 주의사항, 같은 책, 177면.

40) 위 사법협회잡지에 제8회로 추정되는 고시 합격자와 제10회 합격자들이 각각 사법관으로 임용된 시점 사이에 있는 1925년 3월 11일에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된 강신규, 문승모, 손홍팔, 원종억, 정문모, 조인환, 최창렬, 홍인석이 있다. 이들은 제9회 고시 합격자라 할 것이다.

41) 차갑진(車甲珍), 박중훈(朴鍾堧), 민경준(閔庚駿), 김홍언(金鴻彦), 정순석(鄭順錫), 박승유(朴勝維). 法務局長→總督, “高等官任徐ノ件內申”, 1927.1.17.; “檢事任徐ノ件內申”, 1927.2.2.; “判事敍任ノ件內申”, 1927.5.7.; “高等官任徐ノ件內申”, 1927.8.24.; “裁判所高等官任徐ノ件內申”, 1928.5.4.,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2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25).

42) 공주지방법원 서기에서 신의주지방법원 영변지청 판사로 임용된 山中忠太, 대구복심법원 서기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판사로 임용된 菊川淳. 法務局長→總督, “判事補任ノ件內申”, 1928.7.11.,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28, 위 조선총독부기록물.

43) 法務局長→光州地方法院檢事正, “高等官任補ニ關スル件”, 1931.2.3.,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30~193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65).

각 원장과 검사장에게 소관 법원 또는 검사국에서 “현재 근무 중인 서기장, 서기 및 판임관 3급봉 이상의 내지인(內地人) 직원으로서 해당 고시에 응시할 희망이 있고, 또 인격, 수완 등이 장래 검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으면 추천순위를 붙여 오는 12월 5일까지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성·대구·평양의 3개 복심법원장·검사장이 법무국장에 보낸 회신에는 특별임용고시에 응시를 희망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명단 및 그중 검사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자와 추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임용고시는 유예되고 말았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판검사를 6명 증원하는 안을 갖고 본국 내각과 교섭하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판검사가 증원되면, 정원 증가분 및 현 결원을 사법관 시보와 특별임용자로 채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국 내각의 반대에 막혀 증원안이 좌절되면서, 결국 특별임용고시의 시행도 곤란해진 것이었다.⁴⁴⁾

이상 특별임용 고시 및 임용에 관한 공식적 자료와 문서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해 별개의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적어도 당시 특별임용제도의 실재를 파악하고 있던 일본인은 1920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가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사법협회잡지 1권 10호(1922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 일본인 재판소서기는 “다이쇼(大正) 9년(1920년, 인용자) 초 이 제도가 공포된 때부터 금일까지 고시를 거쳐 서기의 발을 씻은 자가 27명이나 있고, 현재 판사, 검사의 직에 있는 자가 26명에 이른다”고 하였다.⁴⁵⁾ 실제로 이 글이 작성되었을 즈음인 1922년 7월 21일까지 일본인 재판소서기 27명이 판사로 특별임용되었고 그중 1921년에 사망한 1명(江幡直)을 제외하고 26명이 현재 사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⁴⁶⁾ 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의 기자로서 “翠郎生” 또는 “宮崎翠郎”이란 필명으로 주로 법조계 관련 기사를 쓰고 있던 미야자키 요시오(宮崎義男) 역시 1920년 제령 제11호가 통감부서기의 특별임용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며,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⁴⁷⁾

이상과 같이 1920년 제령 제11호는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해 특별임용제도를 도입

44) 法務局長→高等法院長, 同檢事長, 各覆審法院長, 同檢査長, “判事特別任用考試施行ニ關スル件”, 1930.11.24. 등. 법무국 인사계, 극비서류, 193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54).

45) 雨村, “書記八面觀”, 司法協會雜誌 第1卷 第10號, 1922.10, 81면.

46) 江幡直 부산지방 1920년 12월 경성지법 춘천지청 판사로 보임되고 1921년 3월 검사로 전관하여 경성지법 춘천지청 검사를 거쳐 철원지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1925년 사망하였다.

47) 翠郎生, “法曹夜話 司法界變遷錄”, 朝鮮公論 第16卷 第6號, 1928, 77면.

한 것이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조선인 재판소서기는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결국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1910년 제령 제7호의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조선인 재판소서기에게는 별도의 특별임용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민족에 따라 이원화된 특별임용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Ⅳ. 민족에 따른 이원적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

1. 조선총독부 사법관의 민족별 구성 및 특별임용의 규모

(1) 조선총독부 사법관 중 조선인의 비중

먼저 조선총독부 사법관 중 특별임용된 자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표 3>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판사, 검사, 사법관시보의 정원과 현재원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총독부 판사, 검사, 사법관시보의 정원과 현재원 (1910~1945)

연도	판사			검사			사법관시보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현원	현원	현원
1910	186 (183)	75 (71)	261 (254)	56 (54)	7 (6)	63 (60)			
11	186 (187)	75 (62)	261 (249)	56	7 (4)	63 (60)			
12	167 (161)	49 (38)	216 (199)	54	6 (3)	60 (57)			
13	167 (165)	49 (25)	216 (190)	54 (53)	6 (5)	60 (58)			
14	160 (159)	42 (32)	202 (159)	54 (53)	5	59 (58)	10		10
1915	160 (162)	37 (33)	197 (162)	54	10 (7)	64 (61)	11		11
16	160	37 (33)	197 (193)	54 (53)	10 (9)	64 (62)	8		8
17	160	37 (34)	197 (194)	54 (53)	10 (9)	64 (62)	13		13
18	160	37 (35)	197 (195)	59	10	69	15		15
19	162 (152)	37 (34)	199 (186)	62 (60)	10	72 (70)	13		13
1920	162 (151)	37 (40)	199 (191)	62 (60)	10 (11)	72 (72)	7		7
21	162 (156)	37	199 (193)	67 (66)	10	77 (76)	8	1	9
22	164 (153)	37 (38)	201 (191)	72 (69)	10	82 (79)	13		13
23	166	37	203	73	10	83	9	1	10
24	150	33	183	66	9	75	3	1	4

연도	판사			검사			사법관시보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정원(현원)	현원	현원	현원
1925	150	33	183	66	9	75	4	1	5
26	150	33	183	68	9	77	11	2	13
27	153	33	186	73	9	82	11	4	15
28	153	33	186	78	9	87	21	5	26
29	157	33	190	78	9	87	23	1	24
1930	165 (158)	33 (38)	198 (196)	78 (79)	9 (7)	87 (86)	18	1	19
31	165 (159)	33 (39)	198 198	78 (80)	9 (7)	87	22	2	24
32	156 (152)	39 (40)	195 (192)	78	7	85	19	3	22
33	157 (150)	39 (40)	196 (192)	79 (77)	7	86 (84)	28	5	33
34	159 (152)	39 (41)	198 (193)	82 (79)	7	89 (86)	20	5	25
1935	163 (154)	39 (38)	202 (192)	86 (81)	7	93 (88)	14	4	18
36	165	39	204	86	7	93	23	6	29
37	179	45	224	98* (96)	11*	107	30	3	33
38	180 [183]	45 [42]	225	98 [102]	11 [7]	109	32	12	44
39	183 [189]	45 [39]	228	100 [103]	11 [8]	111	26	11	37
1940	187 [189]	45 [43]	232	116 [117]	11 [10]	127	37	25	62
41	197 [197]	45 [43]	242	116 [119]	11 [11]	127 (130)	29	28	57
42	201 [190]	45 [56]	246	124 [121]	11 [14]	135	57	32	89
43	? [214]	? [54]	246 [268]	? [124]	? [21]	135 [145]			
44	? ?	? ?	246 [254]	? ?	? ?	135 [139]			
1945	? ?	? ?	246 ?	? ?	? ?	141 ?			

※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1942; 朝鮮總督府法務局, 朝鮮司法一覽, 1926~1943.

※ 1. 1910~1943년의 판검사의 정원은 위 조선사법일람(朝鮮司法一覽)에 의하고, 1944~1945년의 정원은 '조선총독부재판소직원정원령'(1920.12.18. 칙령 제567호)에 의함. 1910~1942년의 현재원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함.

2. 1910~1942년 정원과 현재원이 다른 경우 ()안에 현재원을 표기하였음.

3. 1938~1944년의 [] 안에 표기된 일본인과 조선인 판검사의 현재원은 '조선총독부직원록'에 근거하여 현재원을 파악한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235면에 의함.

4. 1937년 검사 정원 중 일본인(98명)과 조선인(11명) 정원은 합계(107명)와 맞지 않으나, 위 조선사법일람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옮겼음. '조선총독부재판소직원정원령'(1937.8.14. 칙령 제43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같은 해 검사의 총정원은 107명임.

병합 이후 총독부재판소 조직 및 인원 조정의 경향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판사의 정원 변화 추이이다. 병합 직후부터 1914년까지는 4급 3심제 재판제도에서 3급 3심제로의 변경, 제1심 사건의 원칙적 단독사건화 및 단독사건의 확장, 지방법원 지청의 일부 폐지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재판소조직과 인원의 정리가 단행되었다.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에 판사의 정원 261명에서 197명으로, 현재원은 245명에서 1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910년 71명에 달하던 조선인 판사는 1913년에는 2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후 판사와 검사의 정원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1924년과 1932년 본국 내 각에서 추진한 행정정리의 결과 재판소직원이 감원되었다. 이후 중일전쟁 발발한 1930년대 후반부터 전시 치안유지 및 통제경제체제의 운용을 위한 판검사, 재판소서기 등이 꾸준히 증원되었다.⁴⁸⁾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법직원(司法職員)의 현재원 통계에는 1937년도 통계까지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현재원이 구분 기재되었으나, 1938년 통계표부터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양자를 합친 현재원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38년 법무국에서 종래 '내훈(內訓)'으로 정하고 있던 '재판소 및 검사국직원 정원표'를 개정하여 판사·검사·기타 직원의 각청 배치에 관하여 내지인과 조선인의 구별을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회의 석상에서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법무국장은 내훈 개정에 대해 "반도인(半島人) 직원의 인격·식견·기량 등에 따라 그 발탁, 승격 또는 배치를 더욱 적절하고 원활히 하여 널리 인재 등용의 열매를 거두고 그럼으로써 내선일체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로 반도 사법사상 획기적인 제도개정"이라고 하였다.⁴⁹⁾ 그러나 법무국에서 간행한 조선사법일람(朝鮮司法一覽)에 수록된 재판소와 검사국의 직원 정원표에는 1938년부터 1942년까지 '내지인'과 '조선인'의 정원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1937년에 정해진 조선인 판사·검사·서기 겸통역생의 정원은 이후에도 증가 없이 유지되었다. 내선일체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위 내훈을 폐지한 후에도 같은 내훈에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조선인 직원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표 4>는 정원을 기준으로 판검사 중 조선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편의상 조선인 판사와 검사 정원에 변동이 있는 해를 추려 정원과 조선인의 점유율을 계산하였다. 판사의 총정원 중 조선인에 할당된 정원의 비율은 1910년 29%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1920년대 이후 판사의 정원 중 조선인의 비율은 18~20%, 검사의 정원 중 조선인의 비율은 7~10% 정도이다. 판검사를 모두 합치면 조선인에 할당한 정원은 전체 사법관 정원은 15~16%에 해당한다.

48) 지면 관계상 재판소직원의 정원 변화의 배경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49) "宮本法務局長注意事項", 1938.10., 朝鮮總督府法務局 編, 앞의 책, 1938, 250면.

<표 4> 조선총독부 사법관 정원 중 조선인 정원의 비율

연도	판사			검사			전체 사법관 중 조선인 비율
	총정원	조선인		총정원	조선인		
		정원	비율		정원	비율	
1910	261	75	29%	63	7	11%	25%
1912	216	49	23%	60	6	10%	20%
1914	202	42	21%	59	5	8%	18%
1915	197	37	19%	64	10	16%	18%
1924	183	33	18%	75	9	12%	16%
1932	195	39	20%	85	7	8%	16%
1937	224	45	20%	109	11	10%	17%
1942	246	45	18%	135	11	8%	15%

위 <표 4>의 조선인 직원의 정원과 앞의 <표 3>의 전체 사법관 정원의 증감 추이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판검사의 정원은 거의 해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나 조선인에 할당된 정원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 1910~1942년간의 33년 동안 조선인 판사의 정원은 4번의 감원과 2번의 증원을 거쳐 1937년에 45명이 되었다. 같은 시기 조선인 검사의 정원은 4회의 감원과 2회의 증원을 거쳐 1937년에 11명이 되었다. 병합 당시 75명이었던 조선인 판사의 정원은 1915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7명으로 떨어졌다. 판검사 자리 중 조선인에게 돌아갈 몫은 1924년의 감원 후 42명(판사 33명, 검사 9명), 1932년 이후 46명(판사 39명, 검사 7명), 다시 1937년 이후 56명(판사 45명, 검사 11명)이었다. 그중에서 이따금 생기는 빈자리를 두고 조선인들끼리 경쟁하고 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과 조선인 사법관의 정원이 각각 별도로 할당·관리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한다면, 민족별 특별임용제도가 운용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도 있다. 유자격자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일본인 사법관 정원의 결원분을 조선인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일본인을 위한 특별임용의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법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쪽에서 생긴 결원은 조선인을 위한 임용제도를 이용하여 채우고, 일본인 쪽에서 생긴 결원은 일본인을 위한 임용제도를 이용하는 채우는 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인사관리 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법관 신규임용자 중 특별임용자의 비율

<표 5> 조선총독부 사법관 신규임용자의 임용경로 및 임용자격

연도	최초 임용 직위		합계	일반 임용						특별 임용	
	임판사	임검사		사법관 시보 등	판사	검사	변호사	퇴직 사법관	기타	재판소 서기	기타
1910	3	0	3	3*							
11	13	3	16	6*	8	2					
12	6(4)	1	7(4)		1	2				4(4)	
13	13(2)	3(1)	16(3)	3**	8	2				2(2)	1(1)
14	20(12)	2	22(12)		7	3				11(11)	1(1)
1915	10(3)	1	11(3)	8						3(3)	
16	15(3)	1(1)	16(4)	5	6	1				4(4)	
17	14(6)	1	15(6)	5	3	1				6(6)	
18	12(5)	1(1)	13(6)	6	1					6(6)	
19	11(3)	2(1)	13(4)	6	3					3(3)	1(1)
1920	47(15)	4(1)	51(16)	9	11	3	2	2		24(16)	
21	36(10)	7(2)	43(12)	5	7	4		1		26(12)	
22	16(4)	3(1)	19(5)	5(1)	3	1		1		9(4)	
23	15(4)	8(4)	23(8)	3	10		1			8(8)	1(1)
24	23(1)	3(1)	26(2)	10	2	1	1	1		11(2)	
1925	22(8)	4(3)	26(11)	3	3	2	2			16(11)	
26	16(8)	4	20(8)	1(1)	1	2	9			7(7)	
27	22(5)	1(1)	23(6)	12(1)	2		4			5(5)	
28	19(2)	3(1)	22(3)	2(1)	2		9	1		8(2)	
29	19(5)	7	26(5)	23(3)				1		2(2)	
1930	16(6)	4(1)	20(7)	7		2	4			7(7)	
31	6(2)	2	8(2)	6(1)				1		1(1)	
32	16(2)	8	24(2)	22(1)		1				1(1)	
33	5(2)	3(2)	8(4)	3				2(1)		3(3)	
34	11(2)	6	17(2)	16(2)	1						
1935	10(2)	10(1)	20(3)	17(3)	1	1	1				
36	12(2)	10	22(2)	8(2)	1		13				
37	33(5)	22(1)	55(6)	25(6)	2		27		1		
38	16(1)	8	24(1)	17(1)			6	1			
39	23(5)	9(2)	32(7)	28(7)			4				

연도	최초 임용 직위		합계	일반 임용						특별 임용	
	임판사	임검사		사법관 시보 등	판사	검사	변호사	퇴직 사법관	기타	재판소 서기	기타
1940	20(5)	10(2)	30(7)	13(5)	1	1	14(2)	1			
41	27(13)	19(5)	46(18)	44(18)			1	1			
42	7(4)	4(2)	11(6)	11(6)							
43	41(19)	27(10)	68(29)	67(29)		1					
44	8(3)	6	14(3)	14(3)							
1945	5(5)	3(3)	8(8)	8(8)							
합계	608(179)	210(47)	818(226)	421(99)	84	30	98(2)	13(1)	1	167(120)	4(4)
				소계: 647(102)						소계: 171(124)	

※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10~1945; 大藏省印刷局 編, 官報(1910~1945), 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이하 '일본관보'라 함); 전병무, 앞의 책, <부록 1>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의 주요이력", 298-349면.

- ※ 1. () 밖의 수는 해당 항목의 총 원수이고, () 안의 수는 그중 조선인의 수임.
 2. '사법관시보 등'에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10~1913년의 임용자(* 표시)는 제국대학 법과대학 졸업자로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들임. 특히 1913년의 3명은 제국대학 졸업 후 조선총독부 재판소서기로 임용되었다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들임.
 3. '판사'·'검사'는 일본·대만·관동주의 판사·검사에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임.
 4. '변호사'는 일본 또는 조선에서 변호사명부등록한 후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임. 참고로, '퇴직사법관' 중 6명은 일본 또는 조선에서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에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되었음.
 5. '퇴직사법관'은 서임사령에 '퇴직판사' '퇴직검사', '퇴직이사(理事, 군법회의 구성원) 등으로 표기된 자임. 8명은 조선총독부판검사(7명) 또는 조선주차군 법무관(1명)으로 있다 퇴직한 자이고, 5명은 일본에서 사법관으로 퇴직한 자임. 참고로 '변호사' 중 2명은 사법관 또는 군법무관 경력자임.
 6. 일반임용 중 '기타' 1명은 일본에서 사법관으로 재직하다 조선총독부 행정관으로 전관한 일본인임(1937년).
 7. 특별임용 중 '기타' 4명은 경성전수학교 교원 또는 경부(警部)에서 판사로 특별임용된 조선인임(1913, 1914, 1919, 1924년).

위 <표 5>는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로 신규임용된 자의 자격, 경력, 임용경로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1945년까지 총독부 판검사로 신규임용된 자는 총 818명이었다. 그중 조선인은 226명으로 전체 신규임용자의 27%를 차지하였다. 위 표의 '퇴직사법관'으로 집계된 자 중 6명(일본인 5, 조선인 1)은 조선총독부 사법관을 퇴직한 후 다시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들로서 이미 신규임용 사법관으로도 집계된 자들이다.⁵⁰⁾ 따라서 이렇게 중복으로 집계된 자들을 제외하면, 병합 후 조

50) 遠藤武夫: 조선총독부판사(1921.6.~1923.12.) 퇴직, 1924.8. 임(任)판사.

松本要: 조선총독부판사(1920.8.~1925.10.) 퇴직, 1928.3. 함흥지법 원산지청 검사

齊藤允: 조선총독부판사(1923.7.~1931.2.) 퇴직, 1933.2. 경성지법 판사

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실질적으로 812명이고, 그중에서 조선인은 225명이었다.

다음의 <표 6>은 신규임용 사법관을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고 각 임용자격별 분포를 10년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표 6> 조선인과 일본인 사법관 신규임용자의 임용자격

연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일반임용				특별 임용	소계	일반임용					특별 임용	소계	
	사법 관시 보	변호 사	퇴직 사법 관	일반 임용 계			사법관 시보 등	판검 사	변호 사	퇴직사 법관· 기타	일반 임용 계			
1910~1919				0	42	42	42	48			90		90	132
1920~1929	7			7	70	77	66	54	28	7	155	47	202	279
1930~1939	23		1	24	12	36	126	9	55	4	194		194	230
1940~1945	69	2		71		71	88	3	13	2	106		106	177
합계	99	2	1	102	124	226	322	114	96	13	545	47	592	818

※ 일반임용: 1910년 제령 제6호에 의한 임용

특별임용: 1910년 제령 제7호(조선인) 및 1920년 제령 제11호(일본인)에 의한 임용

위 표에 따르면,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일반임용된 자, 즉 1910년 제령 제6호에 의해 임용된 자는 총 647명이고 그중 102명이 조선인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사법관’으로서 다시 임용된 자를 제외하면, 일반임용자는 실질적으로 641명이고 그중 조선인은 101명이다.⁵¹⁾ 전체 신규임용자(818명)의 21%에 해당하는 171명이 특별임

子安喜市: 조선총독부판사·검사(1921.11.~1928.1.) 퇴직, 1937.7. 임검사.

御園生忠男: 조선총독부판사(1926.~1940.8.) 퇴직, 1941.1. 임검사.

金一龍: 재판소서기, 판사특별임용(1925.7.~1928.9.) 퇴직, 1933.10. 광주지법 목포지청 검사.

51) ‘퇴직사법관’ 중 김일룡은 1925.7. 조선총독부판사로 특별임용되었다가 1928.9. 퇴직하고 1933.10. 다시 총독부검사로 임용되었는데, 김일룡의 1922년 제2차 임용 시 임용자격에 대해 법무국 인사계에서 작성한 임용 관계 서류에는 “김일룡은 메이지43년 10월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33.9.19. ‘檢事退官, 判事檢事任敍並補職ノ件內申’, 法務局長→朝鮮總督,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1933~1934), 국가기록원 소장자료(관리번호: CJA0004077). 주의할 것은, 김일룡은 제2차 임용 시의 임용자격은 특별임용 후의 조선총독부 사법관 경력이 아니라 퇴직 후 약 5년간의 변호사 경력이라는 점이다. 즉, 김일룡은 재판소구성법 제65조의 3년 이상 변호사인 자에 해당하므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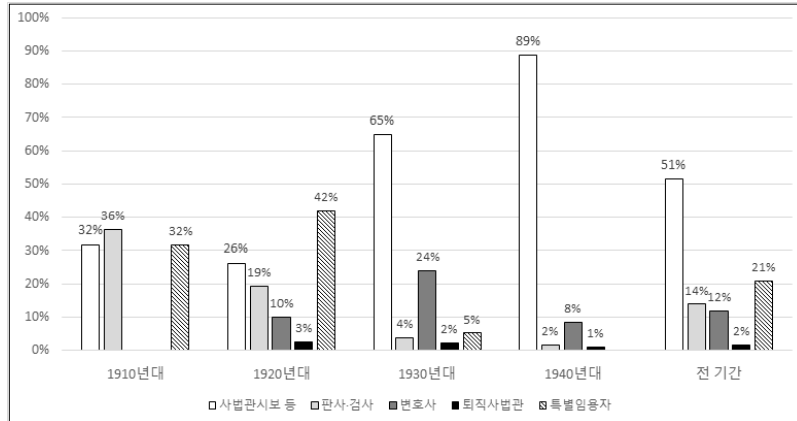
용된 자들인데 그중 1910년 제령 제7호에 의해 임용된 조선인이 124명,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해 임용된 일본인이 47명이었다. 조선인 신규임용자(226명) 중에서 특별임용자(124명)는 전체의 55%에 해당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법관시보 출신자(99명)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1910년 제령 제7호의 조선인 특별임용이 이루어진 1912~1933년 사이의 전체 조선인 신규임용자(134명) 중 특별임용자(124명)의 비율을 무려 92.5%에 달하였다. 반면, 일본인 신규임용자 전체(592명) 중 특별임용자(27명)의 비율은 8%에 그치며, 1920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이 시행된 1920~1928년의 기간에도 일본인 신규임용자(181명) 중 특별임용자의 비율은 14.9%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 초반까지 특별임용제도는 조선인이 사법관 및 법조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경로였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 조선변호사계에서 일본인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재판소구성법과 변호사법을 조선에 시행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김병로와 같은 일부 조선인 변호사들은 “조선에 재판소구성법을 실시하게 되는 때는 현재 시행되는 사법관전형시험(司法官銓衡試驗)이며 조선변호사시험 같은 것은 해당 법령 실시와 동시에 당연히 철폐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일 불리하게 될 자는 조선인뿐”이라고 하며 절대반대를 펼치기도 하였다.⁵²⁾

아래 <그림 1>은 전체 신규임용자의 임용자격을 사법관시보, 판검사, 변호사, 퇴직사법관, 특별임용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율 및 그 추이를 10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1910년대의 인력공급원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판검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48명)로서 이 시기 전체 신규임용자(132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경력 판검사도 있고 사법관시보를 마치고 갓 판검사로 임용된 직후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전임해온 자들도 있다. 다음으로, 사법관시보 자격을 갖고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42명)와 1910년 제령 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조선인(42명)이 각각 1910년대 신규임용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표 5>에서 ‘사법관시보’ 항목의 인원 중 1910년~1913년에 사법관으로 임용된 12명은 제국대학 졸업자에게 부여되었던 사법관시보 자격을 가지고 곧바로 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들이다.⁵³⁾ 1913년 4월 조선총

의 자격이 있는 자”(1910년 제령 제6호 제1항)로서 임용된 것이다.

52) 1927년 6월 27일 개최된 전선변호사대회(全鮮辯護士大會) 이틀째 대회장에서 김병로의 발언. 毎日申報 1927.6.29. “裁判所構成法으로 掉尾의 論戰, 法曹界始有의 盛會無事終了, 全鮮辯護士大會(二日續).”; 이형식, “제국 일본의 사법통일문제—재판소구성법의 조선 적용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동양사학회) 153집, 2020, 489면.

독사법관시보제도가 신설된 후에는 먼저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임용되어 1년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사법관실무시험'에 합격한 자를 판검사로 임용하게 되었다.



<그림 1> 조선총독부 사법관 신규임용자의 임용자격·경력 분포

1920년대가 되면, 신규임용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279명) 특별임용자(조선인과 일본인 합계 117명)가 전체 신규임용자의 42%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사법관시보에서 임용된 자(73명)는 전체 신규임용자의 26%, 현직 판검사 중에서 임용된 자(54명)는 전체 신규임용자의 19%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변호사와 퇴직사법관에서 판검사를 임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10년 제령 제6호의 일반임용제도에 의해 임용된 것이다. 아마도 일본으로부터 실무경험이 있는 판검사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용 후보자군을 다변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1930년대에는 전체 신규임용자(230명) 중 판검사에서 임용한 자(9명)와 특별임용자(12명)의 비율이 4~5%대로 낮아지고, 사법관시보에서 사법관이 된 자(149명)의 비율이

53) <표 3>의 하단 설명에서 밝혔지만, 1913년 2월 17일 坂口喜助(광주지법 서기→함흥지법 청진 지청 판사), 前田英一(대구지법 서기→광주지법 판사), 田中信助(평양지법서기→광주지법 전주 지청 검사)의 3명이 재판소서기에서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는데, 坂口는 1910.3. 동경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자이고, 나머지 2명은 1911.7. 졸업자이다. “學士及卒業生姓名”, 東京帝國大學 編, 東京帝國大學一覽 從大正6年 至大正7年, 1918, 98면. 본 자료는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검색한 자료임(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940168>).

65%, 변호사에서 사법관이 된 자(55명)의 비율이 24%가 되었다. 1940년대에는 사법관시보 임용자(157명)가 전체 신규임용자(177명)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2.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

(1) 조선인 특별임용자의 출신학교와 임용패턴

여기에서는 조선인 특별임용제도를 중심으로 특별임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조선인 특별임용제도의 이해 및 비교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한 일본인 특별임용의 실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병합과 함께 1915년까지 재판소직원의 인원 정리가 거듭 이루어지면서 병합 당시 75명에 달한 조선인 판사의 정원은 1915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7명으로 떨어졌다. 통감부재판소 판검사에서 병합 후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계속 임용된 자는 일본인은 238명, 조선인은 76명이었는데, 1910~1919년 사이에 조선인은 76명 중 67명(88%)이 퇴직하고, 일본인은 238명 중 90명(38%)이 퇴직하였다.⁵⁴⁾ 이 당시 퇴직한 자의 다수는 정규자격 없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들이었다. 대신, '변호사규칙'(1910.12.15. 제령 제12호, 1912.3.18. 개정 제령 제5호)은 구 한국 시기 이래 재판소의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였다.⁵⁵⁾ 이 시기 변호사로 등록한 조선인들은 구 한국기에 변호사로 등록한 자들과 함께 제1세대 한국인 변호사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등장하는 조선인 법률가들과 비교하여 학력과 자격, 법조 경력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조선의 변호사집단 속에서 낮은 자리에 머물며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⁵⁶⁾

1910년대에 조선인 사법관에 관한 인사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자격 조선인 사법관을 도태시키고 그 빈 자리를 1910년 제령 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조선인들로

54) 전병무, 앞의 책, 52-53면.

55) 1910년 12월 제정된 변호사규칙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구 한국재판소, 구 통감부재판소 또는 조선총독부재판소의 판사, 검사 또는 구 한국의 변호사였던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12년 3월의 사법제도 개편과 함께 개정된 변호사규칙에서 '조선인'이란 한정을 삭제하였다.

56) 박천웅에 따르면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주변화된 변호사들 대다수가 대한제국 시기(1905~10년)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이었다. 박천웅, "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前官), 그리고 주변화",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50호, 2015.

채워나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표 6>에서 보았듯이 식민지시기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임용된 조선인 중에서는 특별임용자가 가장 많았다. 제령 제7호에 의한 최초의 특별임용된 사례는 1912년 10월 14일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검사로 각각 임용된 박유병(朴有秉), 어윤빈(魚允斌), 최호선(崔浩善)이다. 박유병과 어윤빈은 1910년 7월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최호선은 1910년에 니혼(日本)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또는 서기겸통역생으로 임용되었다.⁵⁷⁾ 이들을 필두로 1910년대 총독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된 조선인들은 한국 근대 법조의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첫 세대 법률가들이라 할 수 있다. 특별임용 세대 법률가들이 식민지 시기에는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재조법조계와 재야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표 7>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자의 출신학교

졸업학교		1912~1919	1920~1929	1930~1933	합계
조선 관립 법률학교	京城專修學校	23	61	4	88
	京城法學專門學校	-	2	6	8
	소계	23	63	10	96
일본 사립 법률학교	明治大學	14	3	1	18
	日本大學	1	3	1	5
	中央大學	1	-	-	1
	法政大學	1	-	-	1
	소계	17	7	2	25
미상		2	1	-	3
합계		42	70	12	124

※ 출처: 국편 한국사DB>근현대인물사자료; 전병무, 앞의 책, <부록 1>; 서울法大100年史 編纂委員會 편, 서울대학교 法科大學百年史 1895~1995,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2004; 明治大學校友會本部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大正14年11月, 1925; 日本大學校友會 編, 日本大學校友會會員名簿 昭和3年6月現在, 1928; 田島義方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2冊, 1909-1910.

57) 朝鮮總督府官報 제79호 1910.12.2.; 제74호, 1912.10.29.; 田島義方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2冊, 1909.12.-1910.12., 23면, 133면; 日本大學校友會 編, 日本大學校友會會員名簿 昭和3年6月現在, 1928, 289면. 1910.11.30. 재판소서기 임용자로 표기된 '최호승'(崔浩承)은 '최호선'(崔浩善)의 오타로 보인다.

<표 7>은 124명의 조선인 특별임용자의 출신학교를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다.⁵⁸⁾ 경성전수학교(1911~1922)와 그 후신 경성법학전문학교(1922~1945)를 졸업한 자가 전체 124명 중 96명(77%)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의 사립 법률학교를 졸업한 자는 2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일본 사립 법률학교 출신의 특별임용자는 1910년대에는 17명으로 해당 시기의 특별임용자(42명)의 40%에 달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은 크게 작아졌다.⁵⁹⁾

한편, 1912년 10월 최초의 임용사례에서 이미 보았듯이 총독부고시 제7호 지정된 법률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전형을 거쳐 특별임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학력요건을 충족하면서 재판소서기검통역생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그 사무성적과 자질·능력을 평가하여 사법관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재판소서기를 포함한 판임문관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조선인판임문관시험규칙'(1911.6.28. 조선총독부령 제79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경성전수학교, 관립 고등보통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그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판임문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⁶⁰⁾

특별임용된 조선인 중 4명은 재판소서기·통역생이 아닌 다른 관직을 거쳐 특별임용되었다. 호세이(法政)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0년 11월 경부(警部)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13년 11월 대구지법 검사로 임용된 한용(韓溶),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경성전수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각각 1914년과 1919년에 판사로 임명된 양대경(梁大卿)과

58) 출신학교는 국편 한국사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서울법대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 1895~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2004에 수록된 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 명단; 전병무, 앞의 책, <부록 1>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의 주요이력;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https://dl.ndl.go.jp/>)에서 제공되는 메이지대학, 호세이대학, 니혼대학, 주오대학의 졸업자 또는 교우회원 명부에서 조사한 것임을 밝혀둔다.

59) 학력 '미상'으로 표기된 3명(李鍾南, 金泰榮, 金命洙)은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명단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일본 사립법률학교 졸업자로 추정된다. 메이지대학 법과 졸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당시 메이지대학이 사립학교 중 법학교육으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메이지대학의 전신은 사법성법률학교(司法省法律學校)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1881년 설립된 사립법률학교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로서 개교 당시부터 법률전문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1885년~1908년 동안 시행된 일본의 판검사등용시험 합격자의 약 40%를 메이지법률학교 출신자가 차지하였다. 메이지대학사자료센터 편, 앞의 책, 2011, 28면.

60) 1910.9. 칙령 제396호로 제정, 1912.3. 칙령 제55호로 개정된 '조선인인 관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朝鮮人タル官吏ノ特別任用ニ關スル件) 제5조.

김병로(金炳魯), 출신학교는 미상이나 졸업하고 1919년 3월 경성전수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23년 3월 해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김명수(金命洙)가 그들이다.⁶¹⁾ 양대경과 김병로는 해방 후 각각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올랐다.

5년 이상의 재판소서기 재직이란 조건을 붙인 1920년 제령 제11호와 달리 조선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임용제도에서는 지정된 학교의 3년 이상의 법률학과를 졸업하였다는 학력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1919년 1월 개최된 사법관회의에서 고쿠부 산가이(國分三亥) 사법부장이 말하고 있듯이, 판검사 자격이 없는 조선인 재판소서기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퇴관하고 일본 내지에 유학하거나 경성전수학교에 입학하는 자도 있었다. 고쿠부는 “조선인 판검사 정원은 소수이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라고 하며, 퇴관하는 자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으나 “현하의 사정과 장래의 이해를 잘 고려시켜 일시적인 발분(發奮)으로 뛰쳐나가 일신(一身)의 방향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⁶²⁾ 실제 특별임용자 중에서 이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1920년 11월 경성지법 판사로 임용된 서광설(徐光畲), 1927년 2월 부산지법 밀양지청 판사로 임용된 차갑진(車甲軫)⁶³⁾, 1918년 12월 부산지법 진주지청 검사로 특별임용된 강완선(姜完善)⁶⁴⁾ 등이 재판

61) 한용의 호세이대학 법과 졸업 사실은, “卒業生一覽”, 大韓興學報 第5號, 1909.7.20. 한국사DB>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양대경은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법관양성소 강사, 경성전수학교 교원(1912.12.~1914.10)을 역임하고 1914.10.22. 판사로 임명되었다. 국편 한국사DB>한국근현대인물자료. 김병로는 1913년 7월 메이지대학 법과를, 1915년 6월 메이지대학 고등연구과를 졸업하고, 1915.9.30. 경성전수학교 교유(敎諭)로 임명된 후 이듬해 1916.4.1.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1919.4.26. 조선총독부판사로 임명되어 부산지법 밀양지청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1920.4.17. 의원면직하였다. 전병무,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제58호, 2018, 89면;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23, 70면. 김명수의 학력에 대해 전병무, 앞의 책, 303면에 “와세다대학 중학부(中學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편 한국사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의 학력으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김명수의 학력을 ‘미상’으로 집계하였다.

62) “國分司法部長官注意事項”, 1919.1., 朝鮮總督府法務局 編, 1938, 앞의 책, 104면.

63) 서광설과 차갑진은 신 한국재판소 시기인 1909년 8월 이래 재판소서기검통역생으로 근무하다가 1915년 3월 퇴관하고, 1918년 니혼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돌아와 1918년 8월 다시 재판소서기검통역생으로 임용되었다가 1920년 11월 판사로 특별임용되었다. 대한제국관보 제4444호, 1909.8.20.; 조선총독부관보 제785호, 1915.3.18.; 제1809호, 1918.8.12.; 제2475호, 1920.11.10.; 신한민보 1918.9.19. “동경한인졸업생”.

64) 강완선은 기록상 2개의 사립 법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1911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2년 11월 재판소서기·통역생으로 근무하다가 1914년 5월 퇴관하고, 1916년 1월 다시 재판소서기검통역생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강완선은 메이지대학 법과와 1915년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 메이대학교우회원 명부의 1911

소서기를 그만두고 일본의 사립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다시 재판소서기로 임용되었다가 특별임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특별임용 시험과 인사발령

한편, 1910년 제령 제7호는 학력 요건을 충족한 조선인을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자료로는 그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알기 어렵다. 모종의 시험이 시행되었겠지만, 진술한 바와 같이 1910년대 후반 무렵 또는 1920년대부터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라는 명칭의 시험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고시에 관해 특별히 규칙이 제정된 바 없고, 해당 고시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 예를 들어 '문관고등시험위원회'가 구성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1920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규칙'이 제정되었고, 고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조선총독부판보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기사도 실려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는 어떻게 시행·관리되고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1920년 제령 제11호에 따른 특별임용고시위원회가 조직된 후에는 해당 위원회가 특별임용고시규칙에 준하여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 역시 관리하지 않았을까 한다. 참고로, 판사특별임용고시규칙에 규정된 고시의 개요를 소개하면, 특별임용고시는 고사(考査) 및 시문(試問)의 2종으로 실시되는데, 고사는 법무국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행하며, 시문은 필기와 구술로 하였다.⁶⁵⁾

사법협회잡지 4권 4호(1925년 4월호)에 실린 제10회 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 합격자 기사에 따르면, “응시자 49명에 대해 필기시험의 결과 12명이 통과, 4월 14일 법무국에서 구술시험을 행한바, 전부 급제하였다.”⁶⁶⁾ 앞서 보았듯이 '특별임용고시'의 시문(試問)도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잡지에 수록된 제6회(1925년) 및 제7회(1928년)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고시' 시행 관련 기사도 응시자에 대해 법무국에서 필기시

년 법과 졸업생 명단 중 '강완선'이 있다. 明治大學校友會本部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大正14年11月, 1925, 320면.

65) 필기시험은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중에서 시행하고 민사·형사의 소송기록을 대여하여 그 판결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고시위원은 필기시험의 답안을 조사한 후 구술시험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응시자를 호출한다.

66) 司法協會雜誌 第4卷 第4號, 1925, 115면.

험을 하고 합격자에 대해 구술시험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다.⁶⁷⁾

한편,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자, 즉 사법관후보자고시에 합격한 조선인들의 판검사 임명일이 제각각인 점을 볼 때, 고시 합격자를 장래의 임용후보자로 정해놓고 조선인 사법관 정원 중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짐작된다.⁶⁸⁾ 법무국 인사계에서 생산된 고등관 인사관계 서류를 보면, 법무국장이 총독에게 조선인 사법관 임용후보자의 고등관 임서(任敍)에 관한 건을 내신하면서 그 사유를 “결원 보충”이라 밝히고 정원·현재원·결원의 현황을 기재하고 있다.⁶⁹⁾ 또한, 어떤 서류에서는 임용후보자에 인사발령을 내기에 앞서 법무국에서 해당 임용후보자의 소속 재판소·검사국의 감독관에게 그 임용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⁷⁰⁾

67) 제6회 특별임용고시에서는 응시자 12명에 대해 4월 7일부터 4일간 법무국에서 필기시험을 한 후 8명에 대해 동월 13일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5명이 합격하였다. 司法協會雜誌 第4卷 第4號, 1925.4., 114면. 제7회 특별임용고시에서는 응시자 11명에 대해 4월 17일부터 4일간 법무국에서 필기시험을 하여 그중 6명에 대해 동월 24일 구술시험을 시행하고 6명이 합격하였다. 司法協會雜誌 第7卷 第4號, 1928, 98면.

68) 예를 들어 1925년 4월 제10회 사법관후보자고시 합격자 12명 판검사 임용일(관호안)은 다음과 같다. 김일룡(1925.7.27.), 이호정(1925.7.), 나재승(1925.9.18.), 정규철(1926.2.5.), 박승준(1926. 4.23.). 임석규(1926.7.14.), 조용순(1926.7.20.), 김종석(1926.9.14.), 김세원(1926.10.15.), 김응모(1926.11.3.), 차갑진(1927.2.9.), 박종훈(1927.2.24.).

69) 앞서 본 차갑진에 관한 고등관 서임의 건의 추기(追記)에서 “임서사유”를 “결원보충”이라 하고 “정원 및 현원”은 “지방법원 및 지청판사 정원 121인, 현원 119인 결원 2인”이라 하고 있다. 法務局長→朝鮮總督, “高等官任徐ノ件內申”, 1927.1.17.,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진퇴서류, 192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18).

70) 1931년 3월 광주지법 서기에서 공주지법 청주지청 판사로 임용된 윤철균(尹轍均)의 사례를 보자. 같은 해 2월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 검사정에 윤철균을 ‘가까운 때 재판소 고등관으로 임보될 예정이므로 그 적부에 관해 집무상 또는 소질상 참고가 될 만한 구체적 의견’을 조회하고 본인이 임지로서 남선(南鮮)을 희망하나 다른 지방을 지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회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회보에서 광주지방법원 검사정은 ‘같은 이가 성질이 온순하고 실직(實直)하고, 소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전하며 연구심의 풍부하고, 그 근무성적이 양호하므로 장래 판사로서 책임자로서 인정되므로 임보함이 가하다’고 하고, 희망하는 임지에 관해서는 경상남도 김해에 고령의 조부모와 병약한 부친이 있어서 가급적 남선 지방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인사 형편상 어렵다면 어디에서 근무하든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본인이 말했다고 전하였다. 法務局長→光州地方法院檢事正, 高等官任補ニ關スル件, 1931.2.23.; 光州地方法院檢事正, 院長→法務局長, “高等官任補ニ關スル件”, 1931.3.2., 법무국 인사계, 고등관 진퇴서류 (1930~193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리번호: CJA0004065).

(3) 특별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및 승진

앞서 말했듯이 조선인 특별임용자들은 재판소서기, 경성전수학교 교관, 경부 등 사법 관련 사무를 종사하다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특별임용 전의 직위에서 얼마나 재직하였고, 특별임용 후 사법관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표 8>은 경성전수학교 졸업 등 학력요건을 충족하고 사법관 특별임용 직전의 직위에 임용된 후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되기까지의 평균 재직기간 및 사법관 임용 후 퇴직할 때까지의 평균 재직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1920년 제령 제11호에 의한 일본인 특별임용자의 특별임용 전후의 각 직위에서의 평균 재직기간도 함께 산출하여 표기하였다.

<표 8> 판검사 특별임용자의 특별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임용연도		조선인				일본인			
		특임전 재직기간		특임후 재직기간		특임전 재직기간		특임후 재직기간	
		해당인원	평균기간	해당인원	평균기간	해당인원	평균기간	해당인원	평균기간
1912 ~ 1919	1912~1914	19	2.1	18	9.4				
	1915~1919	23	3.0	23	5.7				
	소계	42	2.6	41	7.3				
1920 ~ 1929	1920~1924	43	3.9	43	6.4	31	13.3	26	11.1
	1925~1929	27	5.5	23	11.0	10	17.4	9	15.6
	소계	70	4.5	66	8.0				
1930~1933		12	7.8	12	8.8				
합계		124	4.2	119	7.9	41	14.3	35	12.1

※ 출처: 대한제국 관보, 통감부공보, 조선총독부 관보; 일본관보(1907-1920)

1. 각 재직기간은 연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조선인 '특임전 재직기간'은 학력요건 충족 후 재판소서기·통역생, 경성전수학교 교관, 경부 등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함. '특임후 재직기간'에 집계된 인원은 휴직자 3명, 사망자 1명을 제외한 것임.
3. 일본인 특임전 재직기간은 신 한국재판소, 통감부재판소, 총독부재판소의 서기로 최초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함. 일본에서 재판소서기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 판사로 특별임용된 6명은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일본인 특임후 재직기간은 휴직자 1명, 사망자 8명, 전관(轉官)자 3명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함.⁷¹⁾

71) 특별임용 후 재직기간의 계산에서는 원에 의해 퇴직한 자와 퇴직의 명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

조선인 특별임용자 124명이 특별임용되기 전에 재판소서기 등으로 재직한 기간은 평균 4.2년이다. 1912~1914년 사이에 특별임용된 자는 재판소서기 등으로 임용된 후 평균 2.1년이 지나 사법관으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점점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1930~1933년의 특별임용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7.8년에 이른다. 물론 이는 1910년대에 통감부재판소 시기에 임용된 조선인 사법관이 다수 퇴직함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자들이 더 빨리 특별임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⁷²⁾ 그러나 이후에는 결원이 덜 발생하였고 아마 사법관후보자 전형도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었을 것이므로 특임전 재직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된 자 사망자와 휴직자를 제외한 119명은 평균 7.9년을 재직하고 퇴직하였다. 특임 후 평균 재직기간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1910년대에는 7.3년, 1920년대에는 8.0년, 1930~1933년에는 8.8년으로 조금씩 길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별임용된 조선인들은 평균 7~8년을 사법관으로 재직하고, 그중 절반은 사법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 이들의 재직기간은 일반임용된 사법관들에 비해 짧았을 뿐 아니라,⁷³⁾ 일본인 특별임용자들에 비해서도 짧았다. 조선인 특별임용자들에게는 특별임용이 변호사 개업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여겨졌을 것이고, 사법관으로 장기근속한다고 하여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다. 재판소구성법상의 자격이 없는 조선인 특별임용자에게 유자격 사법관과 동등한 승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대략 특별임용 초기에 지청이나 지법의 합의부 배석판사로 경력을 시작하여 이후 간혹 복심법원의 합의부원까지 될 수 있었으나, 지방법원 본청이나 지청의 단독판사가 될 즈음에는 더 높은 자리로 갈 가능

였다. 재직중 사망자 또는 징계사유로 인해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경우 우연한 사정이나 비행의 발각으로 당연 퇴관 또는 실관(失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 특별임용자 중에는 재직 중 같은 고등관 급인 재판소서기장(書記長)이나 감옥의 전옥(典獄)으로 전관하였다가 다시 판검사로 보임된 자가 3명이 있는데, 이들 역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간주하여 특별임용 후 재직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72) '특별임용전 재직기간'이 0.9년으로 가장 짧은 박춘서(朴春緒)는 1910년 7월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2년 9월 경성지법 인천지청 서기로 임용되었다가 1913년 8월 평양지법 정주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되었다. '특별임용전 재직기간'이 13.8년으로 가장 긴 조태로(趙泰魯)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2월 재판소서기검통역생으로 임용된 후 1930년 10월 청진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73) 전병무, 앞의 책, 128면. 특임후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자는 양홍기(梁洪基)로 1921년 7월 광주지법 군산지청 판사로 임용된 지 0.2년(2개월)만인 같은 해 9월에 퇴직하였다. 반면, 민병성(閔丙晟)은 1916년 11월 해주지법 서흥지청 검사로 임용된 후 해방 시점까지 28.8년간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고, 1946년 5월에는 청주지법 검사장이 되었다.

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재직기간도 유자격 사법관들보다 짧은 경향을 띠었다.

일본인 특별임용자 27명의 특별임용 전후의 재직기간을 보면, 조선인들의 사례와 뚜렷이 차이가 난다. 일본인 재판소서기 재직자가 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되기 전까지 구한국 또는 조선에서 재직한 기간은 평균 14.3년으로 조선인의 그것의 3.4배 더 길다. 일본인의 특별임용 후 평균 재직기간은 12.1년으로 조선인보다 그것보다 약 4.2년 더 길다. 일본인 특별임용자의 특임전 재직기간이 더 긴 이유는 ‘유능한 재판소서기에게 고등관으로 영진할 길을 마련해준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20년 제령 제11호는 특별임용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5년 이상 판임 이상의 관에 재직하며 사법사무에 종사한 자’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특별임용된 자들은 최단 11.3년, 최장 20.4년을 재판소서기로 재직하였다.⁷⁴⁾ 일본인 특별임용자 47명 중 6명은 일본에서 1904~1910년 재판소서기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조선총독부판사특별임용의 기회를 잡았고,⁷⁵⁾ 39명은 병합 이전에 한국으로 건너와 신 재판소 또는 통감부재판소의 재판소서기로 임용된 자들이고, 2명은 병합 후 조선총독부 재판소서기로 임용되었다.⁷⁶⁾ 즉, 1913년에 재판소서기로 임용된 1명을 제외하고, 1920년 제령 제11호가 시행된 즈음 이 제도에 따라 특별임용되는 자들은 모두 이미 10년 이상을 조선과 일본에서 재판소서기로 근무하였고 몇몇은 소속 재판소서기과의 ‘감독서기’의 자리에 있었다. 이는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는 단순히 ‘5년 이상’ 재근하고 ‘5급봉 이상을 받는 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군이 처음부터 고등관인 판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을 만큼 장기간 재직하고 유능한 재판소서기로 좁혀져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인 특별임용자들은 1920년 제령 제1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법원 지청 판사로 보임되었고, 그 후 지청 검사분국(檢事分局)의 검사로 전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결

74) 특임전 최단기 재직자인 江幡直는 1909년 8월 부산지방재판소 서기로 임용되었고 1920년 12월 부산지법 서기에서 경성지법 춘천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되었다. 최장 재직자인 上田實는 1908년 6월 한국재판소 광주지방재판소 서기로 임용되었고 1918년 6월 광주지법 춘천지청 감독서기에 서 공주지법 충주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되었다.

75) 甲斐渡(1921.11. 광주지법 전주지청 판사), 菅村重藏(1921.11. 광주지법 정읍지청 판사), 播本金五郎(1922.7. 평양지법 안주지청 판사), 井原强助(1924.1. 광주지법 순천지청 판사), 冲清海(1924.1. 전주지법 정읍지청 판사), 山口吸一(1925.5. 평양지법 덕천지청 판사).

76) 병합 후 총독부재판소서기 임용자로는 米倉榮二(1910.11. 총독부 사법부 형사과 속(屬), 1925.4. 판사특별임용), 樺島年太郎(1913.5. 부산지법 밀양지청 서기, 1925.5. 신의주지법 영변지청 판사).

코 지방법원 지청과 지청 검사분국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청의 판검사로 재직 중 고등 법원서기장(書記長)과 형무소 전옥(典獄, 교도소장에 해당)으로 전관한 3명은 나중에 판사로 복직한 후에도 전과 같이 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⁷⁷⁾

반면, 조선인 특별임용자들은 판사와 검사 사이는 물론이고, 상급과 하급의 법원을 오가고 있었다. 1910년 제령 제7호는 조선인 사법관의 직위와 근무처를 한정하지 않았고, 다만 각급 재판소와 검사국에 배정된 조선인 판검사의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조선인들로 채우고 전보·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 오른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미군정기인 1946년 대법관으로 보임된 양대경은, 191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특별임용되어 1917년 8월에는 대구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김병로의 뒤를 이어 제2대 대법원장이 된 조용순(趙容淳)은 1926년 7월에 특별임용되어 해주지법 재령지청 판사, 평양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청 판사를 역임하였다. 내무부장관을 거쳐 1949년과 1955년 두 차례 대법관에 보임된 백한성(白漢成)은 1933년 10월 11일 특별임용되어 평양지법과 청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49년 6월 제2대 검찰총장이 된 김익진(金翼鎭)은 1920년 11월 평양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공주지법 강경지청과 충주지청, 함흥지법, 평양지법 판사를 거쳐 1927년 평양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해방 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1950년 법무부장관에 오르는 이우익(李愚益)은 1914년 1월 부산지법 밀양지청 판사를 시작으로 함흥지법 검사를 거쳐 192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참고로, 특별임용 출신자 12명이 1946년부터 1966년까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으로 보임되었다.⁷⁸⁾

77) 1924년 1월 공주지법 대전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된 宮崎速任는 1933년 4월 공주지법 대전지청 검사에서 대전형무소 전옥으로 전관하여 이후 서대문형무소 전옥을 거쳐 1944년 2월 판사로 복직,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사가 되었다. 1925년 5월 평양지법 덕천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된 山口吸一은 1927년 9월 고등법원서기장으로 발탁되었다가 1930년 12월 판사로 복직, 전주지법 군산지청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1928년 7월 신의주지법 영변지청 판사로 특별임용된 山中忠太는 1932년 2월 고등법원서기장이 되었다가 1933년 8월 판사로 복직하여 경성지법 개성지청 판사, 광주지법 제주지청 판사를 거쳐 퇴직하였다.

78) ○ 대법원장 (보임 시점 순, 이하 같음)

김병로(金炳魯, 학력: 日本大, 1919년 특임, 재임기간: 1948.7.~1957.12. 이하 같음), 조용순(趙容淳, 京城專修, 1926년 특임, 1958.6.~1960.5.)

○ 대법관

양대경(梁大卿, 明治大, 1914년 특임, 1946.5.~1950.4.), 김익진(金翼鎭, 京城專修, 1920년 특

V. 결론

1912년부터 1933년까지 22년 동안 1910년 제령 제7호에 의해 124명의 조선인이 조선 총독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되었다. 그들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으로서 사법관으로 임용된 자는 물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대한제국 말기에 신 재판소 또는 통감부재판소의 판검사로 임용된 한국인들에는 다양한 학력, 경력, 임용경로가 혼재되어 있었다면, 1910년 제령 제7호에 의해 특별임용된 법률가들은 같은 제령에 따라 지정된 법학 전문학교 졸업(그중 77%는 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자), 재판소서기검통역생 등 사법사무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 전형(조선인사법관후보자고시) 합격이란 세 가지 공통된 학력·경력 요소를 갖추고 있다.

공인된 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판소서기검통역생 재직이란 일종의 실무실습 경험을 쌓고 특별임용을 위한 ‘고시’를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특별임용 세대 법률가들은 한국의 근대 법조의 역사에서 전문적인 법조인 교육·충원제도를 통해 양성된, 실질적으로 제1세대 법률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고문 사법과 합격자들보다 더 일찍 법조 경력을 쌓으며, 그중 일부는 법조계와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식민지시기 조선인 법조계뿐 아니라 해방 후 한국 법조계에서도 상층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미군정기부터 1960년대까지 제1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원 구성원으로 보임된 자 중에는 식민지시기 고문 사법과 시험과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외에 늘 특별임용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특별임용 출신 법률가들이 한국의 근대적 법조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이 어떤 제도에 의해 특별임용

임, 1948.10.~1949.6.), 백한성(白漢成, 京城法專, 1933년 특임, 1949.11.~1953.9., 1955.4.~1961.6.), 허진(許璿, 京城專修, 1922년 특임, 1954.9.~1959.9.), 한상범(韓相範, 明治大, 1924년 특임, 1950.6.~1951.2.), 김두일(金斗一, 日本大學, 1932년 특임, 1950.6.~1960.4.), 김동현(金東炫, 京城專修, 1923년 특임, 1952.2.~1957.7.), 김세완(金世玩, 京城專修, 1926년 특임, 1953.6.~1959.12.), 조용순(1926년 특임, 1953.11.~1954.6.), 오필선(吳弼善, 京城法專, 1923년 특임, 1959.10.~1961.6.), 방준경(方俊卿, 京城法專, 1933년 특임, 1964.3.~1966.12.).

* 미군정 초기인 1945년 11월 대법관 발령이 있었으나 그에 응하지 않은 서광설(徐光畲, 日本大, 1918년 특임)은 제외하였다.

된 것인지조차 부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었다. 본문에서는 몇 가지 자료를 들어 조선총독부가 1910년 제령 제7호와 1920년 제령 제11호라는, 민족에 따라 구분된 사법관특별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된 자료들, 특히 특별임용자의 인사발령 및 임용고시에 관한 자료들은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된 전 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1920년 제령 제11호의 특별임용제도가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제령의 입법이유서나 특별임용제도에 관한 일본인 당국자, 판사, 서기 등의 발언, 특별임용의 실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20년 제령 제11호가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위한 특별임용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 밝혀낸 것은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병합 직후 제정한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7호는, 신 재판소에서 통감부재판소 시기까지 부분적 변화를 겪으며 시행되어온 사법관 임용제도를 병합 후의 조건 및 향후의 사법관임용방침에 따라 갈무리한 것이다. 두 제령은 앞으로 총독부 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법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서 충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령 제6호에서는 본국의 법제에 준하는 학력요건을 갖춘 자의 일반임용제도를 마련하고, 제령 제7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는 사법관으로 특별임용될 자의 학력요건을 제도를 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제령 제6호와 제7호를 입안한 시점에서는—종래 시행되어온 임시적 조치로서 일본인 재판소서기를 판검사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를 병합 후에는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1910년 제령 제7호는 제령 제6호에 따른 임용제도에 대해 조선인 사법관의 특별임용을 위한 제도를 설정한 것이었다. 1908년 신 재판소 시기 이래 시행된 사법관 임용의 방식 및 일한병합의 명분에 비취 총독부 사법관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조선인에 할당되어야 하나, 적어도 당분간은 제령 제6호에서 예정된 유자격 사법관의 양성·선발 시스템 내부로 조선인들이 진입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법관 임용을 지망하는 조선인들에게는 1910년 제령 제7호는 당분간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사법관 임용경로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 특별임용된 자들은 ‘지정 법률학교 졸업(전문 법학교육 이수)→재판소서기, 경성전수학교 교원 등 사법 관련 직무 종사(일종의 실무수습)→특별임용 전형 합격’이란 관문을 차례차례 통과한 자들이었다. 이는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제도의 실제 운용에서 ‘사법관시보 자격 취득→사법관시보로

서의 실무수습→사법관 실무시험 합격 후 사법관 임용'이라는 정규자격을 가진 사법관 임용제도와 유사한 요소들이 채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앞에서 특별임용 세대 조선인 법률가들은 한국의 근대 법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 법조인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제1세대 법조라고 한 것이다.

반면, 1920년 제령 제11호는 지방법원지청 판검사로 임용할 일본인 자격자 구인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법원지청 판사로 보할 자에 한하여' '당분간' 시행한다는 조건이 붙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재판소서기로부터 판검사를 특별임용하는 제도는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한 병합 직후의 사법관임용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이미 제도 시행 직후부터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결국 1920년부터 1928년까지 모두 7회의 특별임용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끝으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정책의 특징 및 그 전개양상을 파악함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 논의에 따르면,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는 통감부재판소 시기의 일본인 사법관 임용에 관한 1909년 칙령 제255호와 한국인 사법관 임용에 관한 동년 칙령 제259호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병합 이전의 시기에 1909년 칙령 제259호에 제국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한국인의 통감부재판소 판검사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나름 그 이유가 설명된다. 그런데 병합 직후 1910년 제령 제6호와 제령 제7호를 입안하면서, 제국대학 법률학과 졸업 등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상의 자격을 갖춘 조선인에 대해서도 제령 제7호의 특별임용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이 단순히 이른바 유자격 조선인에게 일반임용 외에 특별임용이란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유자격자를 포함하여 조선인 사법관 일반을 1910년 제령 제6호와 구별되는 특별임용제도의 틀 안에서 임용해 나가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후자의 의도였다면, 병합 직후와 1920년의 조선인 사법관 임용정책의 성립과 전환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이 1920년 제령 제11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로 인해 조선인 사법관의 특별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도로 미해명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종전의 설명에 따르면, 적어도 1920년 제령 제11호 시행 후에는 조선인 사법관 특별임용에 관해서도 같은 제령 및 1920년 총독부령 제108호에 따른 특별임용고시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그러한 설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1910년 제령 제6호에서 예정하는 '문관고등시험위원회의 전형'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직 자료로써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1920년 제령 제11호에 따른 특별임용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그에 준하는 고시 방법이 조선인에게도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또한, 1910년 제령 제7호의 특별임용제도는 1934년부터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그 이유 또는 배경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는 조선인이 많아짐에 따라 조선인을 위한 특별임용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시기의 선택 등에 관하여 해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사료

- 대한제국 관보, 통감부공보, 조선총독부 관보, 직원록,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 잡지자료,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Central Decimal Files, 1910 - 1963,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 법무국 인사계, 극비서류철, 1923-1928, 조선총독부기록물, 관리번호: CJA0004259; 극비 서류, 1926-1931, CJA0004054; 고등관진퇴서류, 1927; 고등관 진퇴서류, 1928, 관리번호: CJA0004025; 고등관진퇴서류, 1930-1932, 관리번호: CJA0004065; 고등관 진퇴서류, 1933-1934, 관리번호: CJA000407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
- 公文類聚, 國立公文書館;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ノ部(內規ヲ含ム)第二卷,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
- 大藏省印刷局 編, 官報; 東京帝國大學 編, 東京帝國大學一覽 從大正6年 至大正7年, 1918; 明治大學校友會本部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大正14年11月, 1925; 日本大學校友會 編, 日本大學校友會會員名簿 昭和3年6月現在, 1928; 田島義方 編,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2冊, 1909-1910, 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
- “日治時期法律人員”, 臺灣・司法院, <https://www.judicial.gov.tw/tw/cp-1964-211912-cdda4-1.html>.

2. 논저

- 김두식,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 金炳華, 續近代韓國裁判史, 韓國司法行政學會, 1976.
- 金炳華, 韓國司法史(近世編), 訂正重版, 一潮閣, 1979.
- 김창록, “식민지 조선의 법조 양성: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법과 사회이론학회) 제41호, 2011
- 大檢察廳, 韓國檢察史, 大檢察廳, 1976.

-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9집, 2012.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 박천웅, “민족성과 채용방식에 의한 조선총독부 사법관료구조의 계층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
- 박천웅, “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前官), 그리고 주변화”,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50호, 2015.
- 法院行政處 編, 韓國法官史, 六法社, 1981.
- 서울法大100年史 編纂委員會 편, 서울대학교 法科大學百年史 1895~1995,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2004.
- 안중철, “‘한국병합’ 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치외법권 폐지교섭과 타결”,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제36호, 2007.
- 이영근 외, 법에 사는 사람들, 삼민사, 1982.
- 이형식, “제국 일본의 사법통일문제—재판소구성법의 조선 적용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동양사학회) 제153집, 2020.
- 김이조, 법조를 움직인 33인의 법조인상, 법률출판사, 1999.
-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 전병무,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제58호, 2018.
-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 메이지대학사자료센터 편, 메이지대학 소사, 메이지대학, 2011.
- 大邱地方法院長 吉田平治郎, “裁判事務の現状と親切なる努力”, 司法協會雜誌 第5卷 第4號, 1926.
- 友邦協會 編, 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記録, 友邦協會, 1966.
- 雨村, “書記八面觀”, 司法協會雜誌 第1卷 第10號, 1922.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1942.
- 朝鮮總督府法務局 編, 總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 朝鮮總督府法務局, 1938.

朝鮮總督府法務局, 朝鮮司法一覽, 朝鮮總督府法務局, 1926, 1930, 1935, 1936, 1942, 1943.

朝鮮總督府法務局法務課, 朝鮮の司法制度, 朝鮮總督府法務局, 1936.

翠郎生, “法曹夜話 司法界變遷錄”, 朝鮮公論 第16卷 第6號, 1928.

<국문요약>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사법관 충원을 위해 1910년 10월 제정된 제령 제6호에 의해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상의 사법관 자격을 갖춘 자를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를 조선총독부 사법관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두 개의 제령을 시행하였다. 1910년 10월 제령 제7호(조선인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에 따르면, 제국대학, 관립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년 이상 법률학과를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특별임용할 수 있고, 1920년 제령 제11호(조선총독부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청의 판사로 보할 자에 한하여 당분간 5년 이상 재판소서기 등 판임관 이상의 관에 재직하며 사법사무에 종사한 자를 고시를 거쳐 판서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판검사 특별임용제도에 관한 종래의 문헌 및 최근 연구에서는 1910년 제령 제7호는 조선인에게만 시행되는 특별임용제도이고 1920년 제령 제11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임용제도라고 이해하고, 1920년 제령 제11호에 따라 재판소서기로 재직중인 조선인과 일본인이 총독부 판검사로 특별임용되었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 제령 11호를 제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실제 특별임용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임용제도에 관한 종래의 이해와 설명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1920년 제령 제11호는 ‘사실상’ 일본인만을 위한 특별임용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 바꿔 말하면, 조선총독부는 1910년 제령 제7호와 1920년 제령 제11호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별개의 특별임용제도를 설정하고 운용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민족 구분에 따른 특별임용제도의 운영 실태를 특별임용자의 학력, 임용 전 경력, 임용 후 보직과 승진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재판소, 사법관특별임용, 식민지 사법제도, 근대한국 법조사(法曹史), 1910년 제령 제7호, 1920년 제령 제11호

<Abstract>

Ethnic Differentiation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of Judicial Officer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oon, Joonyoung**

For recruiting judicial officers of the colonial courts in Korea, the Governor General's ordinance No. 6 promulgated in 1910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llowed to appoint qualified judges, prosecutors, or judicial apprentices under the Japanese Court Organization Act, while implementing two ordinances to introduce a special employment system to appoint unqualified persons as judicial officers. According to the ordinance No. 7 of 1910, A Korean who ha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law of Imperial University, government schools, or schools designated by the Governor-General could be specially appointed as judges or prosecutors. According to the ordinance No. 11 of 1920, regarding the special appointment of judges of the Government-General's Court, a person who had been engaged in judicial affairs as a court clerk for more than five years could be specially appointed as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branch. In previous literatures and recent studies on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of judicial officers of the colonial court, it was understood that the ordinance No. 7 of 1910 was only applied to Korea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No. 11 of 1920, Koreans and Japanese serving as a court clerk were specially appointed as judges. However, the documents prepar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nforcing the ordinance No. 11 of 1920 and actual cases of special appointments, it is revealed that the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so far are inaccurate and wrong. In this article, it is explained that the ordinance No. 11 of 1920 established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only for Japanese, in other words, through the

*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ordinance No. 7 of 1910 and the ordinance No. 11 of 1920,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and operated ethnically differentiated special appointment system of judicial officers.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aspects of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system according to ethnic classification through data on academic background, pre-appointment experience, and post-appointment position and promotion.

Key Words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Cour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pecial appointment of judicial officers, colonial judicial system, history of the legal profession of modern Korea, the ordinance No. 7 of 1910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the ordinance No. 11 of 1920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